

현안분석 2007-

아시아법제 연구 07-01

중국의 신 기업파산법

양 효 령

중국의 신 기업파산법

The New Corporate Bankruptcy Law of China

연구자 : 양효령(부연구위원)

Yang, Hyo-Ryang

2007.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파산은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의 하나로써 경제적 파탄상태를 법에 의하여 재판상 처리하는 절차 내지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파산이 있을 수 없다는 중국에서도 경제활동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중국의 파산법은 新 『企業破産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파산절차가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어 행정적 색채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대출의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은행권의 부실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회사정리나 영업부진 등으로 파산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보호법규가 모호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어려웠다.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법률의 적용범위를 개인이외의 모든 기업법인에게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화해절차와 기업정돈(重整)제도를 보강하여 회사정리(重整)절차를 신설하고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파산기업 경영자의 불법파산에 대한 불법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파산기업의 담보권 우선변제를 실시하여 채권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조취를 시

행함으로써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 키워드 : 파산, 기업파산법, 파산절차, 화해절차, 회사정리(重整)절차, 청산절차, 채무자재산, 파산기관, 정책적파산, 법률책임

Abstract

Bankruptcy is an economic phenomenon resulting from free competi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is used to mean a procedure or a system in which a financial crisis is dealt with in court by statute. Even in China where no bankruptcy was seen in the traditional market a system of bankruptcy has been introduced to maintain soundness of economic activities.

The former Bankruptcy Act of China was nominal with limited application scope and poor contents before the New Corporate Bankruptcy Act entered into force. Bankruptcy procedures were controlled and led by the Government with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were subsidized. The subsidy paid in the form of bank loan was the main factor in deepening the insolvency of banks. Poor legislation to protect companies in need of bankruptcy due to liquidity or a slump in business has made it difficult for a smooth bankruptcy process.

The new Enterprise Bankruptcy Act is provided to regulate a procedure for corporate bankruptcy and to liquidate bonds and liabilities. This change was attempted to protect both creditors' and debtors' legitimate rights. Mainly this law specifies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scope including all corpor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The new law invites individual professionals to set up a system of administrator which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A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is established by supplementing the previous reconciliation proces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While this law legitimates the offshore effect of corporate bankruptcy, the law provides for legal responsibility on illegal bankruptcy of operators

of failed companies. Measures were taken to protect creditors' rights by being guaranteed a priority to claim-secured assets of failed companies. This new law maintains and protects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enhances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 Key words : bankruptcy, corporate bankruptcy act, reconciliation process, liquidation process, debtors' asset, bankrupt companies, bankruptcy based on policies, legal responsibility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新 「企業破産法」의 概觀	11
제 1 절 新 「企業破産法」의 制定과 體系	11
1. 新 「企業破産法」의 沿革	11
2. 新 「企業破産法」의 體系	16
3. 新 「企業破産法」의 主要 變化	19
제 2 절 新 「企業破産法」과 「民事訴訟法」과의 關係	23
1. 民事訴訟節次의 特別節次	23
2. 管轄權의 適用	25
3. 民事裁定 效力의 適用	26
제 2 장 破産節次의 開始	29
제 1 절 破産申請	29
1. 適用範圍	29
2. 破産原因	31
3. 破産申請人	32
4. 破産의 申請 및 撤回	34
제 2 절 破産節次 機關	36
1. 管理人	36
2. 債權者會議	43
3. 債權者委員會	49

제 3 절 破産申請의 受理	50
1. 破産申請의 審理	50
2. 破産申請 受理의 裁定	51
3. 破産申請 受理裁定の 通知와 公告	51
4. 破産申請 受理裁定の 法律效力	53
제 3 장 清算節次	55
제 1 절 破産宣告	55
1. 破産宣告	55
2. 破産宣告의 通知	56
제 2 절 債務者의 財産	56
1. 債務者 財産의 範圍	56
2. 債務者 財産의 處分行爲 無效 및 取消	57
3. 還取權	59
4. 別除權	60
5. 相計權	61
제 3 절 破産費用과 共益債務	62
1. 破産費用	62
2. 公益債務	63
제 4 절 破産債權의 申告와 確定	64
1. 破産債權의 種類	64
2. 破産債權의 申告	65
3. 破産債權의 審査와 確定	67
제 5 절 換價와 配當	68
1. 換 價	68
2. 配 當	69
제 6 절 破産節次の 終了	73

1. 破産節次の 終了 原因	73
2. 破産節次 終了의 法律效力	74
제 4 장 會社整理(重整)節次	75
제 1 절 會社整理(重整)節次の 申請과 期間	75
1. 會社整理(重整)節次の 新設	75
2. 會社整理(重整)節次の 開始申請	76
3. 會社整理(重整)節次の 期間	78
제 2 절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作成과 批准	80
1.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作成	80
2. 會社整理(重整)計劃案에 대한 決議와 批准	82
제 3 절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遂行과 終止	86
1. 會社整理(重整)計劃의 遂行 및 監督	86
2. 會社整理(重整)節次の 終止와 法律效力	87
제 5 장 和解節次	89
제 1 절 和解節次の 開始	89
1. 和解節次の 새로운 變化	89
2. 和解節次の 開始申請 및 裁定	90
제 2 절 和解協議案의 作成과 決議	91
1. 和解協議案의 作成	91
2. 和解協議案에 대한 決議와 批准	92
제 3 절 和解節次の 遂行과 終止	94
1. 和解節次の 遂行	94
2. 和解節次の 終止와 法律效力	94
제 6 장 其他 特殊破産과 法的 責任	97

제 1 절 其他 特殊破産	97
1. 政策的 破産	97
2. 金融機關의 破産	100
제 2 절 法的 責任	102
1. 破産企業의 法定代表 및 高級管理 任員	102
2. 債務者 및 債務者와 關聯 있는 關係者	102
3. 管理人	103
4. 破産犯罪 및 刑事責任	104
제 7 장 結 論	107
참 고 자 료	111
◆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117

제 1 장 新「企業破産法」의 概觀

제 1 절 新「企業破産法」의 制定과 體系

1. 新「企業破産法」의 沿革

(1) 中華人民共和國 政府 수립 이전

파산은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의 하나로써 경제적 파탄상태를 법에 의하여 재판상 처리하는 절차 내지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파산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경제활동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다.¹⁾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빚은 자녀가 상환한다(父債子還)”는 봉건주의 법률사상이 2천여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는 자연법 개념의 파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나라 말기 1906년에 法律大臣 沈家本 선생이 ‘채권자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破産律』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에서도 최초의 파산제도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다.²⁾ 그러나 『破産律』의 기본원칙이 기존의 외국인, 중국관부, 상인의 순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당시의 상관습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08년에 폐지되었다.³⁾

중화민국이 건립된 이후 국민당정부는 많은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北京法律修訂館이 일본과 독일의 파산법을 참조하여 총 337조의 파산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초안은 1926년 받아들여져 1934년까지 시행되었다. 1934년 국민당정부의 전 사법행정부는 실체법, 절차법

1) 전병서, □□도산법□□, (서울, 법문사, 2006), P.1~2.

2) 鄒海林 著, □□破産程序和破産法實體制度比較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1998), P.39.

3) 孫應征 著, □□破産法--法律原理與實證解析□□,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4), P.4.

및 법규 등으로 구성된 파산법초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상인의 채무 변제 임시조례」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1935년 총칙, 화해, 파산 별칙으로 구성된 총 4장 159개 조문의 「파산법」을 제정·공포하였다.⁴⁾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1) 「企業破産法(試行)」의 제정

1945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새롭게 수립 되면서 국민당정부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1986년 「企業破産法(試行)」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근 30여년 이상 파산법 관련법규가 전무한 상태였다.

중국은 건국초기 계획경제체제하에 국영기업들의 이익을 회수하고 손실을 모두 보상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영기업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비밀리에 파산시켰다.⁵⁾

1978년 중국정부가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국영기업들이 상품시장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경영관리 부실로 인하여 장기간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낙후된 기업의 문제를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前국무원기술경제연구센터에서 1983년 작성한 「과학기술 진보,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건의(關於爭取科技進步, 推進經濟發展若干問題的建議)」에서 파산제도를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낙후된 기업을 도태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파산법의 제정

4) 鄒海林 著, 전게서, P.39.

5) 정설아, “중국 파산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 □□하나경제리포트□□, (서울, 2004. 10), p.1.

을 건의 하였다. 이후, 1984년 5월에 개최된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기업파산법 제정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기술경제연구센터와 관련부처가 주축이 되어 ‘기업파산법초안팀’을 구성하여 기업파산법초안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⁶⁾

1986년 1월 31일 국무원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企業破産法(草案)』을 동년 3월 9일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1986년 6월, 9월, 11월에 각각 개최된 제6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제17차 회의에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파산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조건, 파산원인, 파산기업의 근로자 안치문제 등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고,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企業破産法(試行)』을 통과 시켰다.⁷⁾

『企業破産法(試行)』은 전민소유제공업기업의 파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시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8년 4월 13일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이 통과 되고 3개월 후인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⁸⁾

『企業破産法(試行)』의 적용범위가 전민소유제공업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법인의 파산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19장에 ‘법인기업의 파산 및 채무변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 하였다.⁹⁾ 동시에 동년 11월과 2002년 8월 최고인민법원에서는 『企業破産法(試行)』의 집행을 관철하는데 발생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關於貫徹執行<企業破産法(試行)>若干問題的意見),

6) 安建 等 主編, □□企業破産法實用教程□□,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p.5-6.

7) 安建 主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釋義□□, (北京, 中國法律出版社, 2006), p.6.

8) 『企業破産法(試行)』은 총칙, 파산신청과 수리, 채권자회의, 화해와 회사정리제도, 파산선고와 파산청산, 부칙으로 총 6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9) 韓長印, “中國破産法的發展將況及法學論題”, □□民商法學□□, (북경, 2005.1), P.102.

「기업파산 안건의 심리 중 발생하는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若干問題的規定)을 각각 제정하여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였다.

또한, 국무원에서는「企業破産法(試行)」 제4조와¹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¹¹⁾ 1994년 10월과 1997년 3월에 각각 「일부 도시에서 시행한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在若干城市試行國有企業破産有關問題的通知), 「일부 도시에서 시행한 국유기업의 파산 및 근로자 재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關於在若干城市試行國有企業兼并破産和職工再就業有關問題的補充通知)를 제정하여 국유기업 파산 이후 근로자의 생존권보장문제, 토지사용권의 처리 및 기업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의 대출 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¹²⁾

2) 新「企業破産法」의 제정

계획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된 舊「企業破産法(試行)」은 파산의 대상이 국유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상급 주무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관대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등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企業破産法」의 제정이 제기 되었다.

10) 「企業破産法(試行)」 제4조는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파산기업의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적절히 안배하고, 그들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당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법(辦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임.

11) 「企業破産法(試行)」 제43조는 “기업파산법의 시행의 구체적인 부처와 조치절차에 관해서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임.

12) 安建 等 編著, 전거서, p.7.

1994년 3월 전인대재경위원회는 제8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안에 근거하여 新 『企業破産法(草案)』 작업을 시작 하였으며, 1995년 9월 전인대재경위원회가 작성된 초안을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 등 기타 관련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었다.

1998년 제9기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파산법 제정을 5대 입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2년 새로운 초안을 완성하였으나 당시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과 맞물려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¹³⁾

2003년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新 『企業破産法』 제정을 계속해서 입법계획에 다시 포함시키고 같은 해 8월 21일 전인대재경위원회가 ‘新 『企業破産法(초안)』 입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초안 작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2004년 2월 新 『企業破産法』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2004년 6월 21일 이 초안을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심의 이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각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수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2004년 10월 22일과 2006년 10월에 각각 개최된 제10기와 제23기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2차, 제3차 심의를 거쳤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 입법위원회가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완성한 新 『企業破産法』 최종초안을 2006년 8월 27일 개최된 제19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상정하여 157표의 찬성으로 新 『企業破産法』이 통과됨으로써 12년에 걸친 초안작업이 종료 되었으며, 2007년 6월 1일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企業破産法(試行)』은 폐지되었다.¹⁴⁾

13)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와 신 파산법초안의 내용 및 그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서울, 2005.6), p.234.

14) 安建 等 主編, 전거서, p.8~9.

2. 新「企業破産法」의 體系

(1) 新「企業破産法」의 構造

중국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¹⁵⁾ 받고 있는 新「企業破産法」은 총 12장 1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제1장)과 부칙(제12장) 이외에 파산신청과 심리(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 재산(제4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제5장), 채권신고(제6장), 채권자회의(제7장), 회사정리절차(제8장), 화해(제9장), 파산청산(제10장)과 법률책임(제11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新「企業破産法」은 기업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파산능력이라고 한다. 이 파산능력을 상인과 비상인으로 구별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는 것을 ‘일반파산주의’라고 하며, 상인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입장을 ‘상인파산주의’라고 한다.¹⁶⁾ 중국의 경우 新「企業破産法」의 적용범위를 기업법인에 한정해 두고 있어 ‘제한적인 상인파산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⁷⁾

新「企業破産法」은 하나의 단일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파산, 화해 및 회사정리절차 3가지로 나뉘어서 규율하고 있으며, 각 절차사이에 연결이나 이행(移行)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15) 王欣新, “新破産法透析(上,下)”, 中國人民大學法學院財經法論壇(第8期), 2006년 10월 31일 발표논문, 李曙光·王佐發, “中國破産法實施的法律經濟分析”,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16) 전병서, 전거서, p.21.

17) 湯維建 主編(1), □□企業破産法新與舊專題活比與案較例應用□□, (北京, 法制出版社, 2006), p.33~34.

(2) 破産節次의 흐름¹⁸⁾

파산절차이던 화해 또는 회사정리절차이던 간에 채무자가 절차개시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파산절차나 화해 및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상기 3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먼저 신청한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에서만 다른 절차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①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는 전환이 가능하며¹⁹⁾, 회사정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다.²⁰⁾ ② 파산절차와 화해절차에서는 상호 이행(移行)이 가능하다. 즉, 화해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전환이 가능하며²¹⁾, 파산절차 신청 이후 파산선고 이전까지는 인민법원에 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²²⁾ ③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재건형절차에 속하는 화해와 회사정리절차 간에는 상호 전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파산법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산, 화해 및 회사정리절차 모두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① 파산 신청 절차, ② 공고 및 통지 절차, ③ 관리인과 및 그 직책, ④ 파산 채권, ⑤ 파산채권의 신고, ⑥ 채무자의 재산, ⑦ 파산비용과 공익채권, ⑧ 환수권·저당권·상계권, ⑨ 법적 책임 등이 있다.

18) 李永軍, “中國破産法程序与實體問題解析”, □□영산법률논의□□ 第3卷 第2號, (부산,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2006), 제1회 한중법률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중국논문), p. 13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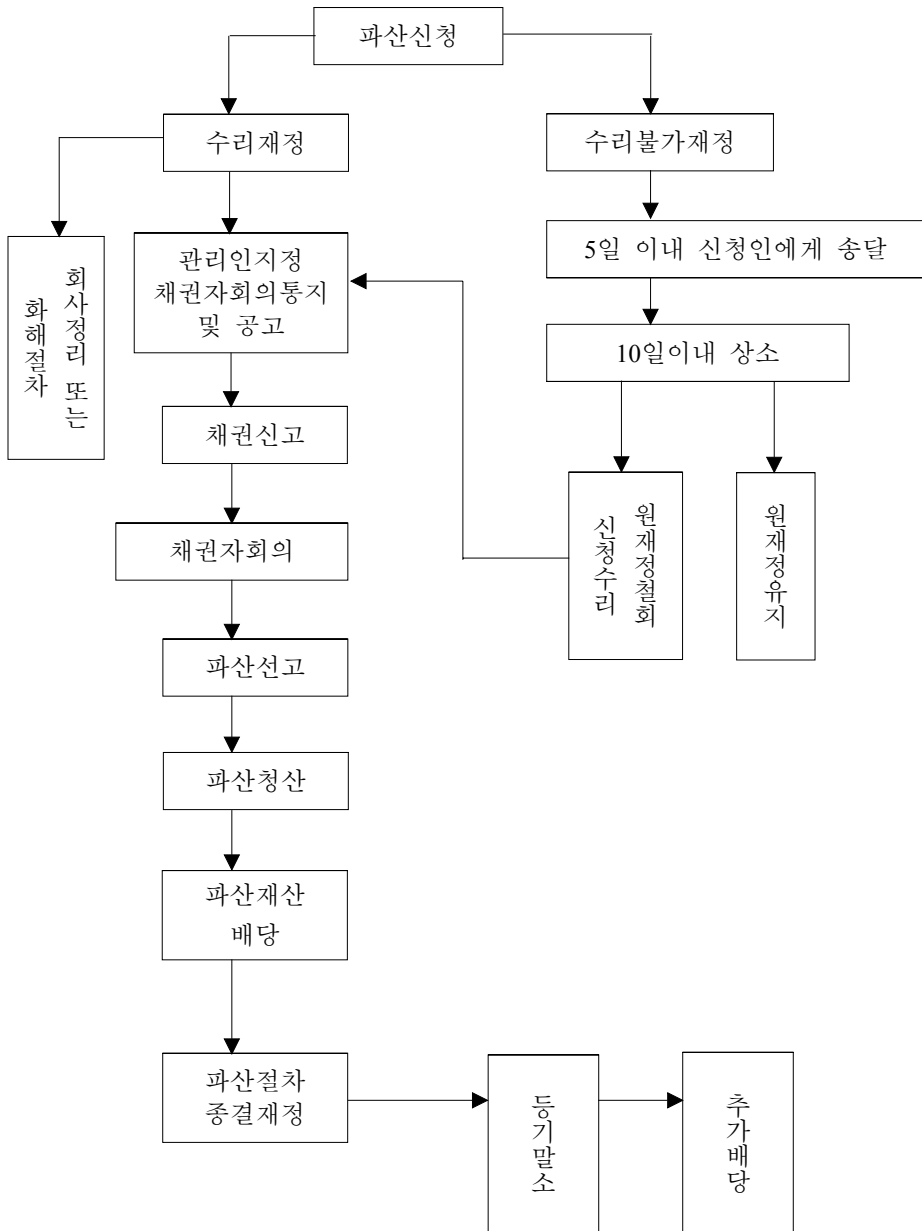
19) 『企業破産法』 제70조 제2항.

20) 『企業破産法』 제87~88조, 제9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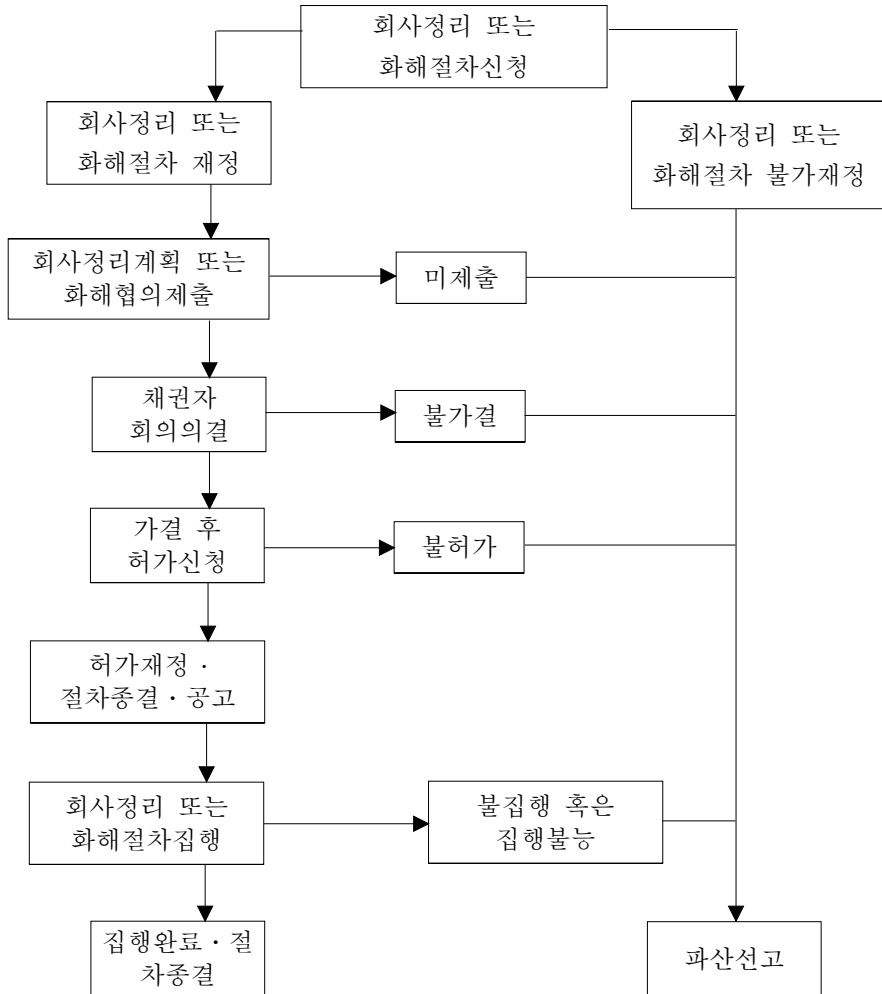
21) 『企業破産法』 제99조, 103~104조.

22) 『企業破産法』 제95조.

(도표1) 파산절차 흐름도



(도표2) 회사정리 및 화해절차 흐름도



3. 新『企業破産法』의 主要 變化

新『企業破産法』은 중국경제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많은 변화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舊『企業破産法(試行)』과 비교

해 볼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특징들이 있다.²³⁾

① 적용범위의 확대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적용범위가 국영기업에게만 한정하고 기업 법인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산절차의 통일화 및 진행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즉, 국유기업과 법인형 민영기업, 三資기업,²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말하며, 심지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²⁵⁾

또한,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정책성 파산’을 별도로 규정하여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들을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리함으로써 향후 파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²⁶⁾

② 정부의 사전인가 불필요

종전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였으나,²⁷⁾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

23) Ann vom Eigen, “China's New Bankruptcy Law Encourages Investment”,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25-8 ABIJ 8 October 2006 <http://www.lexis.com/research/retrieve?_m=bdb6cecc278f478d23a83a9b74983536&docnum=4&_fmtstr=FULL&_startdoc=1&wchp=dGLbVzW-zSkAB&_md5=8c6530eb31400e9cd3f272726aaa2b4b&focBudTerms=china&focBudSel=all>.

24) ‘三資企業’란, 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와 外資企業를 말한다.

25) 李永軍, 전계문, 2006, p.115~116.

26) 新華網 보도자료, “기업파산법의 3대 특징: 특수보호”, 2006.8.27. <<http://news.xinhuanet.com>>.

27) Xianchu Zhang * Charles D. Booth, “Chinese Bankruptcy Law in an Emerging Market Economy”, 2001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Fall, 2001 <http://www.lexis.com/research/retrieve?_m=ac40a3a3706587f5a665daec10f8a1cc&docnum=1&_fmtstr=FULL&_startdoc=1&wchp=dGLbVzW-zSkAB&_md5=7bec12f471d9f9edb1b632254a236572&focBudTerms=&focBudSel=all>.

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파산은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제도의 도입

舊『企業破産法(試行)』이 제정 될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파산절차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파산절차에 참여하고 있어 법률적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으나, 新『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파산절차 과정에서 파산채권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관리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²⁸⁾

④ 회사정리(重整)절차의 신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우수 기업은 장려하고 부실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원칙하에 기존의 화해절차와 기업정돈(重整)제도를 보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파산절차를 시행하여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한편 일시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회생 가능한 기업은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구제하여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⁹⁾

회사정리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의 지속 및 회사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청산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기업이 당해 절차를 통해 파산청산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개시의 다원화, 정리절차의 다양화, 타 절차 보다 우선적용, 참여주체의 다양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추구하고 있다.³⁰⁾

⑤ 기업파산의 역외효력 인정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시에涉外파산사건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28) 王欣新, 전계문, p.12~17.

29) 王衛國 等編著, □□破産法□□, 清華大學出版社 2006년, p.94~95.

30) 郭智慧 編著, □□新企業破産法操作指南与文書范本□□, 法制出版社 2006년, p.288~289.

서 한 국가의 기업파산이 다른 국가에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세계의 공장과 최대의 잠재시장인 중국도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에 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舊「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속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외국의 도산절차 효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³¹⁾ 그러나, 新「企業破産法」에서는 국제조약과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개시된 파산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이외의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외국법원의 파산판결에 대하여 호혜원칙과 사법공조 또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 중국법원도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국 현실을 바탕으로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제한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국에 있는 외국상장기업 및 향후 중국에 상장할 기업들에게 국제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⑥ 파산기업 담보권의 우선변제

新「企業破産法」의 통과를 지연시킨 가장 큰 이유였던 파산기업의 근로자 생존권보장 문제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종신보장과는 달리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³²⁾

파산법의 주요 목적은 채무변제의 공평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 및 자원의 적절한 배분 등에 있기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실업문제, 사회보장 등의 문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상술한 법률들의 규제대상 및 원칙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하나의 법 즉 파산법에서 같이 규율하게 된다면 충돌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종전의

31) 李國光 主編(1), □□新企業破産法理解與適用□□,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6), p.54.

32) 吳高盛 主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條文釋義與活用□□, 人民法院出版社 2006년, p.278.

정책성 파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노동법」 혹은 「사회보장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파산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는 입법체계를 확립하여 담보권의 우선변제와 근로채권의 변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다.³³⁾

제 2 절 新「企業破産法」과 「民事訴訟法」과의 關係

1. 民事訴訟節次의 特別節次

新「企業破産法」이 시행되기 전에는 舊「企業破産法(試行)」의 적용범위가 전민소유제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법인의 파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기업의 파산 및 채무변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新「企業破産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파산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기업의 파산을 허용하면서 이원화 되어 있던 파산절차를 일원화 하면서 파산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적용문제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³⁴⁾

新「企業破産法」과 「민사소송법」은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파산집행절차에 관해 규범화하고 있으며, 후자는 일반 민사절차를 규범화하고 있다. 이들 양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파산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둘째, 「企業破産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재정(裁定)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소를 할 수 없다. 셋째,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심리할 때에 「파산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3) 王欣新, “新「파산법」透析”, 中國人民大學法學院 財經法論壇(第8期) 발표문, p.6~7.

34) 「企業破産法」 제4조에서는 “파산사건의 심리절차에 대해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破産法」과 「민사소송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의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企業破産法」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企業破産法」은 파산원인·채권재단과 파산채권 등 실체법적 규정과 파산신청·수리·기업회사정리절차, 화해 및 청산 등의 파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전형적인 소송절차법으로서 민사주체의 민사권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상의 문제를 규범하고 있다.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新「企業破産法」과 「민사소송법」은 모두 법원과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이지만,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이 법의 일반 규정은 파산사건에 적용되지만 「企業破産法」의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보충역할을 하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또한, 新「企業破産法」은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써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실체법의 규정과 절차법의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파산사건은 민사소송에 속하지만 특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 즉, 법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정한 비례에 따라 공평하게 모든 채권자들에게 강제 배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한 절차 즉, 파산신청, 수리, 기업회사정리절차, 화해 및 청산 등의 심리절차가 필요하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상술한 특별절차 이외에 일반 민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에 관해 모두 규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정이 없는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감독절차 이외에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민사소송법」 제4~5조), 소송관할권(「민사소송법」 제2장), 회피제도(「민사소송법」 제4장), 소송대리인(「민사소송법」 제5장 제50조), 소송증거(「민사소송법」 제6장), 소송기간과 송달(「민사소송법」 제7장),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

(『민사소송법』 제8장), 소송비용(『민사소송법』 제9장)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파산사건의 심리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용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파산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이 『企業破産法』에 있을 경우 반드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管轄權의 適用

현재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파산절차를 취급하는 특별전문법원, 즉 파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통상의 법원이 파산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新『企業破産法』에 의하면 “파산사건은 채무자 주소지의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³⁵⁾ 왜냐하면, 新『企業破産法』에서는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어느 심급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新『企業破産法』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하며, 만약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지의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³⁶⁾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어느 심급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2002년 7월 최고인민법원에서 각급 법원으로 하달한 『기업파산 안건의 심리중 발생하는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若干問題的規定)』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 일반관할의 縣·縣級市 혹은 區

35)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의 종류에는 審級管轄, 地域管轄, 指定管轄과 管轄移送(관할권의 이전)이 있다.

36) 吳高盛 전게서, p.6.

의 공산행정관리기관이 심사허가 등록한 기업의 파산사건; 중급법원의 일반관할지역·地級市(本級을 포함) 이상의 공산행정관리기관이 심사허가 등록한 기업의 파산사건; 국가발전계획에 의하여 조정된 기업 파산 사건은 모두 중급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기업의 파산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또는 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기업파산사건을 하급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고, 하급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업의 파산사건을 상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이송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심리를 청할 수 있다. 또한, 省·自治區·直轄市 구역에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기업파산사건의 지역 관할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의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民事裁定 效力의 適用

중국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재정(裁定)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이것은 곧 법원이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민사재정(民事裁定)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⁷⁾

민사재정은 법원의 소송지위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소송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리는 판단으로써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지 재정이 가능하며, 재정은 불요식행위로서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중국 『민사소송법』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裁定)의 적용범위에는 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수리를 하지 않는 것 ② 관할권에 대

37) 譚兵 主編, □□民事訴訟法□□, (北京, 法律出版社, 2004), p.407~411.

한 이의 ③ 기소의 기각 ④ 재산보전조치와 사전조치 ⑤ 소송취하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⑥ 소송의 종결 또는 중지 ⑦ 판결서 오기의 수정 ⑧ 집행중지 또는 종결 ⑨ 중재판결의 불이행 ⑩ 공정기관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채권명의의 불이행 ⑪ 기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①~③항목에 대한 재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新『企業破産法』 제12조의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 또는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원인에 부합하지 않음을 심사를 통하여 발견한 경우에는 신청 기각을 재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파산신청 재정에 대한 상소여부의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破産節次의 開始

제 1 절 破産申請

1. 適用範圍

파산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문제가 바로 파산법의 적용범위이다. 즉, 어떠한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파산능력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채무자가 구비하고 있는 파산능력은 법원이 파산법을 적용하여 파산 혹은 기업회사정리를 선고할 수 있는 전제와 기초가 된다.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전민소유제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전민소유제기업 이외의 기업법인을 『민사소송법』의 기업파산절차를 적용하였다.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의 입법과정에서는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논쟁을 거쳐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업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원화 체계에 있던 파산법의 적용문제를 일원화 하였다.³⁸⁾

그러나, 중국이 新 『企業破産法』의 적용범위를 기업법인에게만 적용하고 자연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국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자연인의 파산을 시행하기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과 자연인의 파산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연

38) 新 『企業破産法』의 입법과정에서는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논쟁이 끝이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의견들 중에 자연인의 파산을 포함하지 않은 기업법인에게만 적용하자는 의견 이외에, 중국 국내기업법인과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이유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법인과 자연인 모두 똑같이 일정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파산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만약 자연인이 파산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상환을 받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李永軍, 전계문, p.132.

인의 재산현황이 투명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은 개인재산의 신고와 관련된 법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이나 재산도피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은 지역적으로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개인생활의 필수품으로 규정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채권상환대상의 범위를 쉽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⁹⁾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한 및 범위 내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을 시행한 특수사례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新·舊파산법이 국유기업 파산문제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특정한 국유기업의 정책성파산에 한해 과도기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모든 국유기업의 파산을 新「企業破産法」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상인파산주의’를 관철시키고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新「企業破産法」의 제정 이전에도 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파산은 「商業銀行法」⁴⁰⁾과 「保險法」⁴¹⁾ 등 관련법의 절차를 적용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금융기관이 중국공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이들 기관의 파산은 자율적인 파산이 아니라 반드시 금융관리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관리인·채권자회의 등 구체적인 파산절차에는 여러 가지의 특별규정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중국현황에 기초하여 상업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의 파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파산절

39)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1~12.

40) 「商業銀行法」 제71조에서는 “상업은행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파산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1) 「保險法」 제86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국무원은행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파산을 선고한다.”

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의 규정을 상호 조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이법의 부칙에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상업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원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심각한 경영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관리·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이 금융기관을 피고 또는 피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을 시행할 경우, 국무원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관법(施行辦法)을 제정할 수 있다.⁴²⁾

또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법인 이외의 조직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합작기업의 파산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企業破産法」의 규정절차를 참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破産原因

파산원인은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상태를 말하며,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은 기각된다.⁴³⁾

국제적으로 파산원인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에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영국의 파산법과 1978년 이전의 미국파산법이 여기에 속하고, 파산원인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대륙법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⁴⁴⁾

42) 汪世虎, “中國金融機構破産立法問題研究”, □□한·중·일 경제 활성화와 법적 과제□□, 2006년 12월, p.127~128.

43) 전병서, 전게서, p.36~37.

44)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13~19.

중국의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법인이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또한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어 ‘포괄주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舊 『企業破産法(試行)』과 新 『企業破産法』의 파산원인을 비교해 보면,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파산의 원인을 ‘기업이 부실한 경영관리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에서도 ‘기업법인이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를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즉 ‘경영부실, 막대한 손실’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반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만기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자산부족으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를 파산의 기본조건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다. 즉,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은 ‘채무변제 기한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산부족으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이 자산은 있는데 매각하지 못하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를 병용하여 기업법인이 변제기한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면 파산원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기업법인의 상환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3. 破産申請人

파산신청은 파산신청권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원인이 존재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 화해 또는

파산청산절차를 청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중국은 파산절차 개시방법에 있어 ‘파산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파산신청은 파산절차개시의 절대적 요건으로 파산신청인의 파산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⁴⁵⁾

중국의 舊 「企業破産法(試行)」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와 청산책임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무자는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고 채무 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화해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제능력의 가능성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기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청산책임자는 기업법인이 이미 해산 되었으나 자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파산청산절차의 개시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청산책임자의 신청에 의하며, 화해절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45) 李國光 主編(2), □□新企業破産法條文釋義□□,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6), p.66-67.
湯維建 主編(2), □□新企業破産法解讀與適用□□, (北京, 法制出版社, 2006), p.37.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 화해 또는 파산청산절차 중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의 경우에 한하여 국무원 금융관독 관리기관만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4. 破産의 申請 및 撤回

(1) 破産申請

파산신청에 관하여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전민소유제기업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기업법인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는 파산신청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를 삭제하고 채권자, 채무자와 청산책임자가 파산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은 반드시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新 『企業破産法』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곧 기업법인이므로, 기업의 법정대표자 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만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기업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에서 결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공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① 신청인·피신청인의 기본사항, ② 신청목적, ③ 신청사실과 이유, ④ 기타 사항을 기재한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파산신청자가 채무자인 경우 파산신청서 이외에 ① 자산현황설명, ② 부채세부목록, ③ 채권세부목록, ④ 재무회계관련 보고, ⑤ 근로자 안치(安置)예비안, ⑥ 사원임금 지불 및 사회보장보험금 납부상황 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破産申請의 撤回

파산신청 철회는 파산신청의 주체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채무자 기업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후에 그 신청을 부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⁴⁶⁾

파산신청의 철회에 대해 각국의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해 주고 있으며, 파산법에서도 파산신청철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신청인의 파산신청 철회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곧 파산절차 개시로 보는 국가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가 제출한 파산신청만을 철회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선고 철회를 허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법원의 파산사건 수리를 파산절차의 개시로 보는 국가는 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하기 이전에 채권자가 파산신청 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파산사건에 대한 수리재정(受理裁定)을 내린 후에는 파산신청 철회를 다시 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한 때를 파산절차 개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⁴⁷⁾

중국의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신청한 訴취하에 대해 인민법원이 취하여부를 재정(裁定)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민사권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 중에 원고가 訴취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법률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인민법원은 권리 처분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행사되었는지를 반드시 심사하고, 기타 당사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46)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77.

47) 安建 等 主編, 전게서, p.23.

에 재정(裁定)으로 訴취하 여부를 비준하고 있다.⁴⁸⁾

파산신청인의 파산신청도 일종의 민사소송에 있어 소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⁴⁹⁾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서는 파산신청인은 파산신청 수리 전에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철회의 비준여부는 인민법원이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파산은 일반적인 민사권리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질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채무의 유통성에 관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청인에게 파산철회 신청을 허가한다는 것이 곧 제출된 파산철회 신청을 인민법원이 반드시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파산신청 철회에 대한 요구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인민법원이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⁵⁰⁾

또한,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철회를 허가한 경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파산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2 절 破産節次 機關

1. 管理人⁵¹⁾

(1) 管理人제도의 도입

파산절차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연속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파산절차에 관계하는 다수의 관계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파산절차를 운영하는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48) 譚兵 主編, □□民事訴訟法□□, 法律出版社 2004년, p.327~328.

49)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102~103.

50)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53~54.

51) 新 『企業破産法』에서 말하는 ‘관리인’이란 우리나라의 ‘파산관재인’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파산관재인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관리인제도’는 新 『企業破産法』의 제정과 함께 새롭게 제정되어 파산절차 운영의 주체로서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세부관련 규정에 있어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⁵²⁾

관리인은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재산관리와 기타 사무를 책임지는 당사자를 말하며, 독립성, 전문성과 독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³⁾ 관리인을 중심으로 파산절차가 운영되면서 채권자회의 및 채권자위원회에서 파산관리인의 중요한 행위에 관해 간접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舊 『企業破産法(試行)』이 제정될 당시 중국정부가 법률제정의 주체이자 파산절차의 참여자로서 채권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인 파산절차들 때문에 법률적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현재 중국의 현황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절차를 시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들이 있었다.⁵⁴⁾ 예를 들면, 국유기업의 파산을 중심으로 제정된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별도의 파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파산선고 수리 시부터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파산기업의 자산을 관리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청산팀(清算組)이⁵⁵⁾ 채무자재산을 인수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청산팀은 파산신청기업의 상급주관부서, 정부재정부서 등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할 여지의 가능성이 높아 파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었다.⁵⁶⁾

52) 王衛國 等 編著, 전계서, p.88~89.

53) 王欣新, “論新破産立法中管理人議制度的設置思路”, □□法學雜誌□□, 2004년 5월, p.34. 郭知慧 編著, 전계서, p.78~80.

54) 郭知慧 編著, 전계서, p.76~77.

55) 청산팀은 파산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책임자이자 집행기구로서 파산재산의 보관, 정리, 가치평가, 처리 및 배당의 권한을 행사하였다(『企業破産法(試行)』 제 24조 제2항).

56) 王衛國 等編著, □□破産法□□,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6), p.90~91.

王欣新, “論新破産立法中管理人議制度的設置思路”, □□法學雜誌□□, 2004년 5월, p.93~94.

상술한 내용을 보완하고 종전에 청산팀을 통해 국유기업의 파산을 관리했던 것을 新 『企業破産法』 제3장에서는 시장화된 독립기구, 전문조직 및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인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능한 관리인의 확보를 위하여 보수 수준, 관리인의 자격, 선발방법 등에 관해 최근에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관리인제도에 관한 후속 규정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指定管理人的規定)』과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確定管理人報酬的規定)』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⁵⁷⁾

(2) 管理人的 選任

① 관리인의 선임방법 및 시기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중심적 기관인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하거나 채권자회의에서 선임하는 방법 또는 채권자회의에서의 선임과 법정관리기관에서 지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⁵⁸⁾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관리인의 선임방법과 시기에 관해서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受理를 裁定한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 법원이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57)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指定管理人的規定)』과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確定管理人報酬的規定)』은 2007년 4월 4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제 14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8)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27.

王欣新, “論新破産立法中管理人議制度的設置思路”, □□法學雜誌□□, 2004년 5월. p.93-94.

회의에 일정한 부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관리인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직무를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채권자회의에서 인민법원에 관리인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⁵⁹⁾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產案件指定管理人的規定)』에 의하면,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인명부에서 지정을 해야 하며, 관리인 명부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기관의 신청을 받아 고급인민법원 및 그 산하의 중급인민법원에서 작성을 한다.⁶⁰⁾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본 지역의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며, 상업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분산된 기업파산을 처리 및 관리해야 하는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인민법원이 소재지역 고급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명부 중 기타 지역의 관리인 또는 타지역 인민법원이 작성한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⁶¹⁾

② 관리인의 자격조건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新『企業破產法』에서는 유관부문, 기관의 인사로 구성된 청산팀 혹은 법에 따라 설립한 법률사무소·회계사무소·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에서 담임할 수 있고, 채무자의 실제상황에 맞춰 관련 사회중개기구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들 전문기관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⁶²⁾

59) 王衛國 等 編著, 전계서, p.91.

60) 양효령, “新『중국 기업 파산법』의 관리인제도에 관한 후속 규정”, □□법령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7년 9월, p.38.

61) 양효령, 전계문, p.38.

62) 양효령, 전계문, p.38.

상술한 사항 이외에, 인민법원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청산팀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 정부 관련 부서·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구·금융자산관리회사 중에서 청산팀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고,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산팀에 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⁶³⁾

그러나, 고의에 기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전문자격증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관리인 담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경우에는 관리인을 담임할 수 없다.

(3) 管理人的 職務

관리인은 근면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⁴⁾

①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의 인수·관리 ; ②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서 작성 ; ③ 채무자의 내부관리 업무를 결정 ; ④ 채무자의 경상지출과 기타 필요한 지출을 결정 ; ⑤ 제1차 채무자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관리인은 채무기업의 영업활동의 계속 또는 정지를 결정 ; ⑥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 ⑦ 채무자를 대표해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에 참여 ; ⑧ 채무자회의 개최 제의 ; ⑨ 기타 책무가 있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서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채권자회의 및 채권자위원회의 감독

63) 양효령, 전계문, p.38.

64) 李曙光, “新破産法의 管理人制度”, 中外民商裁判网 2007년 1월 5일, <http://www.chinainsol.drg/Article_print.asp?ArticleID=696>.

을 받는다.

제1차 채무자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관리인이 다음 행위중의 하나를 계속할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⁶⁵⁾ ① 토지, 건물 등과 관계된 부동산권한의 양도, ② 탄광권·채굴권·지적재산권 등 재산권의 양도, ③ 예금전부 또는 영업권의 양도, ④ 대출, ⑤ 재산담보권 설정, ⑥ 채권과 유가증권의 양도, ⑦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 모두 이행미완료인 계약의 이행, ⑧ 권리포기, ⑨ 담보물의 회수, ⑩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처분 행위.

또한, 필요한 인원을 초빙하여 파산전문가들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4) 管理人的 報酬

관리인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원이 관리인의 보수를 결정한다.⁶⁶⁾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하는 인민법원의 업무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確定管理人報酬的規定)」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보수방안을 확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① 파산안건의 복잡성, ② 관리인의 근면정도, ③ 정리절차, 화해작업에 대한 관리인의 실제 공헌도, ④ 관리인이 부담하는 리스크와 책임, ⑤ 채무자 소재지 주민의 가치분 소득과 물가수준, ⑥ 관리인의 보수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65)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133~134.

66)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133.

관리인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최종 변제한 재산가치의 총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범위 내에서 누진방법으로 관리인의 보수를 확정하게 된다. ① 100만 위안(본수 포함, 이하 동일) 미만인 경우 12% 이하로 확정한다. ② 100만 이상, 500만 위안의 부분은 10% 이하로 확정한다. ③ 500만 이상, 1,000만 위안의 부분은 8% 이하로 확정한다. ④ 1,000만 이상, 5,000만 위안의 부분은 6% 이하로 확정한다. ⑤ 5,000만 이상, 1억 위안의 부분은 3% 이하로 확정한다. ⑥ 1억 이상, 5억 위안 이하의 부분은 1% 이하로 확정한다. ⑦ 5억 이상의 부분은 0.5% 이하로 확정 한다.⁶⁷⁾

또한, 고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기 비율을 참조하여 30%의 변동 폭 이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는 관리인의 보수 비율의 제한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매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최종 확정된 관리인의 보수와 수령상황에 관한 내용은 파산재산의 배당방안에 첨부해야 하고, 화해절차 또는 기업정리절차의 관리인의 보수방안은 화해합의서초안과 정리절차계획초안에 첨부해야 한다.

(5) 管理人的 解任과 辭任

관리인은 파산절차 진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해서는 아니 되며, 만약 관리인이 사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규정해 두고 있다.⁶⁸⁾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하여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관리인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채권자회의에서 인민법원에

67) 양효령, 전계문, p.39~40.

68) 吳高盛 主編, 전계서, p.77.

관리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상황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직권에 의해 직접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⁶⁹⁾

인민법원이 관리인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감독 하에 신임관리인에게 모든 자료, 재산, 영업사무 및 관리인 인장을 인수인계해야 하며 동시에 신임 관리인에게 업무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전임 관리인은 수시로 관리인의 업무수행 상황에 관한 신임관리인, 채권자회의, 인민법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해야 한다.⁷⁰⁾

관리인의 해임을 결정한 인민법원은 해임결정서를 원 관리인, 신임 관리인, 파산신청인, 채무자 및 채무자의 기업등록기관에 송달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2. 債權者會議

(1) 債權者會議의 概念과 法的性質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파산절차에는 행정주의 색채가 농후하여 채권자권익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채권자의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파산절차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의사대표기관인 동시에 권력 기관이다.⁷¹⁾

69)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194.

70)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34-35.

71)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釋義□□, 人民出版社 2006년, p.199.

채권자회의는 본질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의사기관, 권력기관, 결정 기관으로서 절차상의 의결사항들이 파산절차의 진행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는 권력기관 이외에 파산절차 중에 중요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발휘하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감독기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²⁾ 그러므로, 대내적으로는 채권자들의 공동의사표시형식을 통해 조율하고 대외적으로는 파산절차에 대한 참여와 감독을 통해 전체채권자들의 파산참여권을 실현하려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⁷³⁾

(2) 債權者會議의 構成

① 채권자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채권자는 인민법원이 미확정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임시 확정된 채권액 이외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61조 제1항의(7), 제10항 규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향유할 수 없다. 즉, 채권자회의는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모든 채권자(미확정 채권자포함)들로 구성된다.⁷⁴⁾

상기 규정에서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광의적 의미의 채권자와 협의적 의미의 채권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미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와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72) 채권자회의의 법적성질에는 ① 채권자단체기관설, ② 사실적조직설, ③ 자치단체설, ④ 파산재단의 최고권력기관설이 있다. 郭智慧 編著, □□新企業破産法操作指南与文書范本□□, (北京, 法制出版社, 2006), p.109.

73) 湯維建 主編, 전게서, p.200~201.

王欣新, □□破産法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p.97.

74)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332~333.

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파산법 규정에 따라 파산사건을 수리한 법원이 공지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 절차를 마친 채권자를 말한다.

중국의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권자의 채권신고기간을 반드시 확정하고,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확정된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므로, 협의적 의미의 채권자만이 채권자회의에 실제 참석할 수 있다.⁷⁵⁾ 더욱이,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미확정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확정 채권자도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⁷⁶⁾

② 대리인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통의 경우 기타 채권자 또는 채권자 이외의 일반인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다.⁷⁷⁾

또한,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 의장에게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파산기업의 근로자 및 공회(公會) 대표자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회의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근로자 및 공회(公會)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근로자가 어떠한 신분으

75) 安建 主編, 전계서, p.91.

76) 여기에서 말하는 ‘미확정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여부와 범위에 대한 심사가 좀 더 필요한 채권을 말한다.

77) 李國光 主編(2), 전계서, p.334~335.

로 채권자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企業破産法』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보충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3) 債權者會議의 運營

① 채권자회의 소집 및 통지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신고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이후의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 총액의 1/4이상을 소유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의장에게 제의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채권자회의는 법정절차로서 파산비용을 지불할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파산절차가 앞당겨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회의를 취소할 수 없다.⁷⁸⁾ 제1차 채권자회의를 제외하고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회의의 일시 및 횟수에 관해 『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1차 채권자회의 이후 채권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소집하거나 또는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 총액의 1/4이상을 소유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의장에게 회의개최를 제의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 개최는 관리인이 15일 이전에 채권자에게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결사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78)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개서, 213.

② 채권자회의 의장 선임

채권자회의의 의장은 인민법원이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한 때에 의결권을 지닌 채권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고 선포하며, 선임된 의장은 채권자회의를 주관한다.⁷⁹⁾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인민법원만이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의 선출권과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특히, 채권자회의의 의장이 실권을 했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권자 또는 채권자위원회에 채권자회의 의장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③ 채권자회의의 직권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회의에서는 ㉠ 채권대조심사 ; ㉡ 인민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청구, 관리인의 비용과 임금심사 ; ㉢ 관리인에 대한 감독 ; ㉣ 채무자위원회 구성원의 선임과 해임 ; ㉤ 채무자 영업의 계속 또는 정지결정 ; ㉥ 회사정리계획 의결 ; ㉦ 화해협의 의결 ; ㉧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안 의결 ; ㉨ 파산재산의 환가방안 의결 ; ㉩ 파산재산의 배당방안 의결 ; ㉪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고 인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며, 채권자회의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은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⁸⁰⁾

④ 채권자회의의 결의

채권자회의에서의 의결권은 신고 된 파산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채권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회의 구성

79) 安建 主編, 전게서, p.92.

80) 王欣新, “論新破産立法中債權人會議制度的設置思路”, □□法律活用□□, 2005년 3월, p. 16~17.

원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것이어야 한다.81)

채권자회의의 의결은 채무자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이것이 대표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1/2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그러나 화해협약에 대한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점유한 경우에 통과된다.82)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회의에서 결의되지 못한 사항 즉, 파산재산의 관리관한 방안, 환가 및 배당방안, 채권자회의 제2차 표결을 통해서도 통과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83)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의 결의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결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인민법원에 결의를 취소하는 재정을 청구하거나 항고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의 결의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 되어질 경우 채권자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당해 결의를 취소하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점유한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결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81)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49~150.

82)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17~218.

83)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334~335.

3. 債權者委員會

(1) 債權者委員會의 法的地位와 構成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채권자회의의 상설감독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채권자위원회의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를 대표하여 관리인의 직무 및 파산절차의 합법적인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법에서 규정한 책무를 수행하며, 채권자회의의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상설기관이다.⁸⁴⁾

新 「企業破産法」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회의에서 채권자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상설감독기구인 채권자위원회는 파산절차 중의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을 즉시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에서 선임한 채권자 대표와 채무기업의 근로자 대표 1인 또는 공회(公會)의 대표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9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민법원의 서면결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債權者委員會의 職權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회의의 상설기구로서 그 직권은 채권자회의의 일부직능을 행사한다.⁸⁵⁾ 채권자위원회의 직권에는 ①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리 감독 ; ② 파산재산 배당 감독 ; ③ 채권자회의 개최

84) 郭智慧 編著, 전계서, p.122~123.

85) 湯維建 主編(2), 전계서, p.308.

제의 ; ④ 채권자회의에서 위임한 기타 직권이 있다.

상술한 사항 이외에, 채권자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인·채무자의 관계자에게 그들의 직권범위 이내의 업무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문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관리인·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에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사항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절 破産申請의 受理

1. 破産申請의 審理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파산절차의 개시를 위한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리를 해야 한다.⁸⁶⁾

중국의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심리수리(審理受理)’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채권자·채무자 및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이후 파산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을 접수 받은 법원이 법정기간 내에 파산신청에 대해 형식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심리를 하게 된다.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는 ① 파산신청 주체의 적합성 ② 법원의 관할권 ③ 파산신청 형식: 서면형식 ④ 파산비용의 예납이 있다.⁸⁷⁾ 실체적 요건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존재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즉, 채무자의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능력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⁸⁸⁾

86) 安建 等 主編, 전게서, p.23.

87) 郭智慧 編著, 전게서, p.38~39.

88)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79.

2. 破産申請 受理의 裁定

인민법원이 심사를 통해 파산신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 파산신청에 대한 심리결과를 재정(裁定)의 형식으로 수리하게 된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를 재정(裁定)한 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된다.⁸⁹⁾ 이를테면, 채권자의 채권신고나 채권자회의의 소집 및 채무자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제한 등의 파산절차가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한 즉시 개시된다.

파산신청이 법률이 규정한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산신청 제출 자료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기한 내에 신청인이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도록 이를 통지하고, 만약 신청인이 당해 기한 내에 수정 또는 보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⁹⁰⁾

또한,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부터 파산선고를 하기 전까지 심사를 통해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실체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裁定)할 수 있다.

3. 破産申請 受理裁定の 通知와 公告

채무자의 파산절차의 개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수리

89)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104~105.

90)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53~54.

를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또한, 공고형식을 통해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사회의 불특정인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파산신청 수리재정을 통지하거나 공고를 할 때에는 ① 신청인, 피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 ② 인민법원의 파산신청을 수리한 시간 ; ③ 채권의 기한, 지점과 주의사항의 신고 ; ④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업무처리의 주소 ; ⑤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혹은 자산보유자가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혹은 자산교부에 대한 요구 ; ⑥ 제1차 채권자회의 개최의 시간과 장소 ; ⑦ 인민법원이 통지 또는 공지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해야 한다.⁹¹⁾

파산신청자가 채권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자산현황설명, 부채세부목록, 채권세부목록, 재무회계관련 보고, 사원 안착예비안 및 사원임금 지불과 사회보장보험금 납부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裁定)한 경우, 재정(裁定)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파산신청인이 인민법원의 파산신청 수리불가재정 및 기각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⁹²⁾

91)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5.

92)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6.

4. 破産申請 受理裁定の 法律效力

중국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절차 수리개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은 보전 상태에 들어가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⁹³⁾

① ‘채무자의 관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신청 수리재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파산절차 종결일까지 채무자의 관계인은 일련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채무자의 관계인’이란, 인민법원에서 결정한 기업의 재무관리인사와 기타 경영관리인을 포함한 기업의 법인대표를 말하며, 채무자의 관계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이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 나. 인민법원,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또한 예를 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해야 한다 ;
- 다.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서 채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해야 한다 ;
- 라.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소지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 마. 기타 기업의 이사(董事), 감사, 고위 관리직 인사를 새로이 역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파산절차의 원칙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환가금을 법에서 규정한 변제순서에 의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인민법원이 파산

93) 安建 等 主編, 전계서, p.25.

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채무는 무효가 된다.

③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또는 자산보유자는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거나 또는 자산을 인도해야 한다.

④ 관리인은 파산신청 수리 이전에 체결한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 해제 또는 계속이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에는 채무자 재산과 관련한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이미 개시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채무자와 관련한 민사소송 또는 중재는 중지 하여야 한다.

⑥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자와 관련한 민사소송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다. 즉,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채무자와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제 3 장 清算節次

제 1 절 破産宣告

1. 破産宣告

파산선고는 인민법원이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에 재정방식으로 파산절차에 의거하여 파산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말한다.⁹⁴⁾

新『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절차에 관해 ‘파산절차 수리 개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면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인민법원이 바로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화해절차나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는 파산신청 수리와 동시에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 파산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파산신청 수리 후에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⁹⁵⁾

파산신청 수리 이후 인민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⁹⁶⁾

- ①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 ② 기업법인이 이미 회사정리(重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에 열거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채무자의 경영 상

94)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20.

95)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311~312.

96) 郭智慧 編著, 전게서, p.58~60.

태와 재산상태의 계속적인 악화, 구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나)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속일 경우 또는 채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한 경우 ;
(다)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③ 채무자가 화해절차를 신청하고 화해협의초안이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2. 破産宣告의 通知

인민법원은 재정의 형식으로 파산을 선고하며, 파산선고를 재정할 때에는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에 관한 기본사항, 채무자 파산선고 사유와 사실 근거 및 파산선고 일시 등을 명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직접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공고형식으로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제 2 절 債務者의 財産

1. 債務者 財産의 範圍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총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환가되어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진다.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의 집합체를 중국에서는 ‘파산재산’이라고 부르고 있다.⁹⁷⁾

97) 新『企業破産法』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우리나라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전부와 파산 신청이 수리된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⁹⁸⁾

중국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2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하나는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전부와 또 다른 하나는 파산신청이 수리 당시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⁹⁹⁾

여기에서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전부란,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화폐, 공장, 생산재료, 기계설비 등의 유형재산과 토지사용권,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채권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도 채무자재산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¹⁰⁰⁾

또한, 중국에서도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순차적으로 파산재단에 혼입하는 ‘팽창주의’원칙을 도입하여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외에, 채권자의 재산을 파산 신청이 수리된 때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도 파산재단으로 보고 있다.

2. 債務者 財産의 處分行爲 無效 및 取消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 시작 전의 일정한 시기에 시행한 행위로서 공평원칙에 위배되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화하여 관련 재산을 회수하고 파산 재산에 포함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⁰¹⁾

98) 安建 主編, 전게서, p.48~49.

99)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114~118.

100)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109~212.

101) 郭智慧 編著, 전게서, p.205~206.

舊 『企業破産法(試行)』은 채무자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 무효 및 취소행위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파산사건 수리 전 6개월로부터 파산선고 시까지에 행한 5가지 행위에 대해 무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¹⁰²⁾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무효행위와 취소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 인민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파산관재인 즉 관리인이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 1년 이내에 관리인은 이 채무자 재산과 관계되는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처분행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¹⁰³⁾

① 재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 ②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 ; ③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재산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④ 채무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⑤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기업법인이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는 ① 채무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 양도한 경우 ; ② 채무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진실하지 못한 채무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¹⁰⁴⁾

102) 채무자재산에 대한 처분 무효행위에는 ① 재산은닉, 임의분배 또는 무상양도, ② 비정산적인 염가매각, ③ 무담보채권에 대한 담보제공, ④ 상환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사전변제, ⑤ 채권의 포기가 있다.

103) 吳高盛 主編, 전계서, p.82~84.

104)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계서, p.137~138. ‘환취권’을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取回權’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이 破産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수락한 담보제공을 통하여 저당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의 출자자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출자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破産기업의 대표이사, 감사와 고위급 관리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비정상적인 수익 및 불법으로 점유한 기업의 재산에 대해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還取權

인민법원이 破産선고를 하면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破産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이 혼입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破産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가 허용되는데 이를 환취권이라고 한다.¹⁰⁵⁾

新『企業破産法』에서도 인민법원이 破産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의 권리자가 환취할 수 있도록 환취권을 보장하고 있다.¹⁰⁶⁾

권리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만약 관리자가 관리인에게 환취권을 주장하고 관리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에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환취권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일반 환취권과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2가지 유형의 환취권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⁷⁾

105) 安建 主編, 전게서, p.59~60.

106)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40~244.

107)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35~138.

일반 환취권에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관리인을 통해 환취할 수 있는데, 이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매매계약에 기인한 목적물인도청구권, 용익물권,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다.¹⁰⁸⁾

운송중인 매도물의 환취권은 격지자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당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의 채무자에게 이미 발송한 후 채무자가 아직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운송중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¹⁰⁹⁾ 그러나, 관리인이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別除權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 중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하며,¹¹⁰⁾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이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제권은 실체법상 담보권의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제권자는 스스로의 주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별제권의 기초권리는 담보물권이며, 중국의 「민법통칙」과 「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포함하고

108)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265~266.

109)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148~149.

110) 王欣新, “破産別除權理論与實務研究”,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p.31.

있으며, 『해상법』, 『민용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혹은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이와 상응하여 파산청산절차에서의 별제권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이외에 『해상법』, 『민용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저당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향유할 수 있다.¹¹¹⁾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에 있어 파산청산절차에서 별제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파산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경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완전한 만족을 얻으면 별제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고 채권의 전액에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경우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별제권의 목적물의 가치를 당시의 시장가액을 한도액으로 정하고 별제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부족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부족액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¹¹²⁾

5. 相計權

상계는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수단인 하나이다.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권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신청 수리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는 파산채권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¹¹³⁾

111) 王欣新, “破産別除權理論與實務研究”,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p. 40~41.

112)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248~249.

113) 李國光 主編, 전게서, p.249. ‘상계권’을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抵銷權’이라고 칭하고 있다.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신청 수리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관리인으로부터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상계권은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행사하며, 상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채권의 신고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¹¹⁴⁾

파산절차상에서의 상계는 특정한 파산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점에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성에 대한 예외가 되므로 이를 무조건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계권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상계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¹¹⁵⁾

①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수리 이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 ; ②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파산신청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③ 채무자의 채무자가 이미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파산신청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다.

제 3 절 破産費用과 共益債務

1. 破産費用

新「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비용은 재단채권의 일종으로써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 발생한 각종의 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파산안건의 소송비용 ; ② 채무자 재산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③ 관리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임금과 직원을 초빙하는 비용이다.¹¹⁶⁾

114) 安建 主編, 전게서, p.62~66.

115) 上官文慶, “破産抵銷權制度應廢除”, □□中國律師□□, 2006년 12월, p.40.

116)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155~158.

파산비용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직접 관리인으로부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은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다.¹¹⁷⁾

파산비용이 충분할 경우에는 채무자재산에서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채무자재산이 파산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결을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公益債務

공익채무에 관해 新『企業破産法』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공익채무란, 파산절차 중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총칭을 말한다.¹¹⁸⁾

공익채무와 파산비용은 모두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파산비용은 파산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며 환가 및 배당을 위해 지拂하는 비용이다. 이에 반해 공익채무는 관리인이 파산절차를 집행하는데 있어 계약, 권리침해, 무인관리와 무당이득 등의 민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¹¹⁹⁾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채무의 범위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쌍방 모두 이행미완료인 계약의 이행 청구로 인하여 생긴 채무 ; ② 채무자 재산이 무인관리를 받아 생긴 채무 ; ③ 채무자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

117)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256~257.

118) 安建 主編, 전게서, p.52.

119)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11~112.

무 ; ④ 채무자를 위해 영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노동 임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및 이로 인하여 생긴 기타 채무 ; ⑤ 관리인 혹은 관계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채무 ; ⑥ 채무자재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채무가 있다.

또한,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사이에 우열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채무자재산이 모든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비용을 먼저 변제하고, 채무자재산이 모든 파산비용 또는 공익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¹²⁰⁾

제 4 절 破産債權의 申告와 確定

1. 破産債權의 種類

新 『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당시에 채무자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즉,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수리하기 이전에 성립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파산재산으로부터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¹²¹⁾

舊 『企業破産法(試行)』과 199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기업파산법의 집행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무담보채권과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담보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무담보 채권 ②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담보채권 ③ 담보채권 중에 담보목적물로 변제하지 아니한 부분 ④ 파산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가 가지는 구상권 ⑤ 위 채권에 대해 발생하는 파산선고일까지의 이자 ⑥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

120) 安建 主編, 전게서, p.55~56.

121)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267.

인의 파산을 모르고 지급한 어음금 또는 어음을 인수하여 발생한 채권 ⑦ 청산조의 계약해제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보상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¹²²⁾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에서의 파산채권에는 ① 보통채권¹²³⁾ ② 무담보 채권 ③ 담보채권 ④ 연대채권 ⑤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⑥ 조건부 채권·기한부 채권과 소송·중재판결이 나지 않은 채권 ⑦ 파산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가 가지는 구상권 ⑧ 계약해지(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⑨ 위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의 파산을 알지 못하고 위탁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 ⑩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파산을 모르고 지급한 어음금 또는 어음을 인수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¹²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¹²⁵⁾ 조세채권과 채무자가 체납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 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破産債權의 申告

(1) 破産債權의 申告節次

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에 대해서

122) 王衛國 等 編著, 전게서, p.106.

123) 중국에서는 일반채권을 ‘보통채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통채권’이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변제를 완전히 받지 못한 채권과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담보채권을 말한다.

124)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166~170.

125) 新華網 報道자료, “企業破産要向法院提交職工安置和工資支付情況”, 2006년 8월 27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6-08/27/content_5013160.htm>.

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파산채권에 대한 신고는 舊 『企業破産法(試行)』에 의하면 인민법원의 파산사건 수리 후 채권자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혹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에 인민법원이 확정된 소정의 신고기간 안에 채권자가 관리인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파산신청 수리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인민법원에서 정하고 공고를 한다.¹²⁶⁾

파산채권자가 관리인에게 파산신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안에 채권액과 재산상의 담보권 설정여부를 설명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한 채권이 연대채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과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연대채권의 신고는 연대채권자들 중의 1명이 연대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수인의 연대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이 된 경우 당해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을 각 파산안건 중에 구분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¹²⁷⁾

파산채권은 지정된 신고기간 안에 신고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재산의 최후배당 이전까지 채권을 보충신고할 수 있게 규정해 두고 있다. 단, 보충신고 된 채권의 조사와 확정을 위한 비용은 보충신고를 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126) 郭智慧 編著, 전게서, p.228~229.

127)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24~125.

(2) 破産債權 申告의 法律效力

파산채권에 대한 신고의 법률적 효력에는 먼저, 파산채권자의 경우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자의 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 셋째, 관리인이 작성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파산채권 신고는 실체법상의 효과로 소송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¹²⁸⁾

3. 破産債權의 審査와 確定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기 위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新 『企業破産法』에서도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심사해서 확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¹²⁹⁾

新 『企業破産法』에 의하면 관리인은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 자료를 접수 받은 후 기재대장에 등록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심사를 하고 동시에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된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보관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인은 작성된 파산채권자표를 제1차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대조심사를 받고 채무자,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이 확정판결을 한다. 만약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28) 郭智慧 編著, 전게서, p.229.

129) 陳奇偉·王國良, “論破産債權確認制度之立法構建”, □□民商法學□□, 2005년 1월, p.99~100.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파산채권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은 인민법원에서 행사한다.¹³⁰⁾

제 5 절 換價와 配當

1. 換 價

중국에서는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의 수리재정(受理裁定)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하고, 선임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하여 파산재산을 환가해야 한다.¹³¹⁾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파산재산의 환가와 관련하여 청산조 또는 관리인이 환가방안을 마련하고 당해 환가방안을 채권자회의의 결의 및 법원의 裁定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산에 대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이 배당의 실시를 위해 환가방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¹³²⁾

파산재산을 환가하는 방법에는 주로 매각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채권자회의에서 동의를 한 경우 경매를 통해 파산재산을 환가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파산재산의 경매는 강제경매에 속하며 일반적인 강제경매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강제경매는 국가기관 즉, 인민법원에서 강제집행 법률에 근거하여 압수한 경매물품을 공개적으로 경쟁하여 결정된 최고액으로 매각하나, 파산재산의 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

130)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196~197.

131)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321~322.

132) 郭智慧 編著, 전게서, p.420~421.

경매와는 달리 비교적 복잡한 관계들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파산재산은 동산, 부동산 및 무형재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파산재산의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는 채권자, 채무자, 파산기업의 근로자, 정부 등 비교적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파산재산의 경매에는 新 「企業破産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경매법」, 「노동법」, 「토지관리법」, 「회사법」 등 일련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¹³³⁾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비금전형태의 파산재산을 법정조건과 방식에 따라 금전형태로 전환을 시켜야 하며, 파산재산이 유통제한물인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부서가 매각해야 한다. 또한 파산재산중의 설비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¹³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재산을 매각할 때에 관리인이 채권자회의에서 의결된 또는 인민법원에서 정한 파산재산 환가방안에 따라 적시에 매각해야 하며, 파산기업을 전부 또는 부분 매각을 통해 환가할 수 있다

파산기업을 매각하여 환가할 경우에 이 중의 무형재산과 기타재산은 단독으로 매각하여 환가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경매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양도가 제한된 재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¹³⁵⁾

2. 配 當

(1) 破産財産의 配當方案

파산재산의 배당은 파산재산을 환가하여 마련한 금전을 파산법에 근거하여 정한 각종 파산채권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채권자에

133)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50~152.

134) 王衛國 等 編著, 전게서, p.132~133.

135) 郭智慧 編著, 전게서, p.422~424.

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¹³⁶⁾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재산을 배당하기 전에 관리인은 반드시 파산재산의 배당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한 후에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¹³⁷⁾

관리인이 작성한 파산재산 배당방안에는 ① 파산재산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 ② 파산재산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액수 ; ③ 배당할 수 있는 파산재산의 액수 ; ④ 파산재산의 배당 순위, 배당률 및 액수 ; ⑤ 파산재산 배당시행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2) 破産財産의 配當 順位

파산재산은 채권자회의의 결의와 법원의 재정을 거쳐 배당방안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규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변제한 후에 법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하고 그 배당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다. ① 파산기업이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보험비용 ; ② 체납한 세금 ; ③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때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¹³⁸⁾

新 『企業破産法』에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채권의 우선 배당을 인정하고 다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① 채무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 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 ② 파산인이 체불한 전항의 규정 이외에 사회보장보험료와 파산인이 체납한 세금 ; ③ 보

136)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40.

137) 安建 主編, 전게서, p.161~164.

138) 王衛國 等 編著, 전게서, p.139.

통채권의 순이며, 만약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때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한다.¹³⁹⁾

舊 『企業破産法(試行)』과 新 『企業破産法』의 배당순위에 관한 규정은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채권과 담보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해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담보채권의 배당에 있어 채권자가 당해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1순위로 배당해야 하는 근로채권의 범위를 제한해 두고 있지 않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복리비용은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파산재산으로 변제하며 변제에 부족한 부분은 특정재산에서 이 특정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채권의 우선 배당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이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담보채권과 일반채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¹⁴⁰⁾

(3) 破産財産의 配當履行 方法

파산재산의 구체적인 배당시기에 관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파산재산의 배당방안을 인민법원의 허가재정을 받은 후에 관리인이 파산재산의 배당방안을 이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와 확정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관리인이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다.¹⁴¹⁾

139)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327~328.

140) 郭智慧 編著, 전게서, p.431~435.

趙建聰, “破産企業職工經濟補償金の合理性探究”, □□人民司法□□, 2004년 10월.

141)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512.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회의에서 다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방식은 금전으로 진행해야 하며, 배당 방법에 있어서 근로채권과 파산비용을 먼저 변제한 후에 담보채권을 우선변제 하고 변제를 완전히 받지 못한 채권은 보통채권으로 전환되며,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 채권은 보통채권으로 전환된다.

파산재산은 한 번에 배당이 완료되거나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배분이 될 수 있다. 관리인이 파산재산의 배당방안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배당을 할 때에는 매회 배당되는 재산액과 채권액을 공고해야 하고 최후배당을 할 때에도 당해 배당이 최후배당임을 명확히 공고해야 하며, 동시에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한다.¹⁴²⁾

또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추가배당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가배당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해야 할 재산이 발견된 경우와 배당에 충당할 파산인의 기타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분배방안에 따라 추가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4) 配當金の 供託과 支給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은 채권자를 위해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임치한 배당액은 최후배당 공고일에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는 기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고, 최후배당 공고일에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¹⁴³⁾

142)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331.

143)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45~246.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파산재산의 배당액은 관리인이 반드시 공탁해야 하며, 채권자가 최후배당 공고일로부터 만 2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배당액 수령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인 또는 인민법원은 공탁한 배당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파산재산을 배당할 때에 소송 또는 중재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은 관리인이 반드시 그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하며, 파산절차 종료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배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임치한 배당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 6 절 破産節次の 終了

1. 破産節次の 終了 原因

파산절차의 종료원인은 파산절차 종료의 법률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 본인의 상황에 기인하거나 파산재산과 파산예방절차의 서로 다른 법률적 구성요소에 따라 파산절차 종료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¹⁴⁴⁾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인민법원이 파산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파산재산이 파산비용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 ② 파산재산의 배당이 완료된 후에 청산조가 종결을 신청한 경우 ; ③ 파산기업이 정돈절차를 거쳐 화해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법원이 파산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서는 ① 파산인이 배당에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재정을 청구한 경우 ; ② 관리인은 최후배당을 완료한 후에 바로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배당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재정을 신청

144)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519~520.

한 경우 ; ③ 파산비용과 공익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④ 채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채무가 변제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파산절차가 종료된다.¹⁴⁵⁾

2. 破産節次 終了의 法律效力

파산절차 진행 중에 법률에서 규정한 파산절차 종료원인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관리인에게 파산절차종료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파산절차 종료여부를 재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관리인은 파산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료 재정을 가지고 파산기업의 등기기관에 가서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관리인은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말소등기 절차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무가 종료되며, 파산채무자인 파산기업의 법인격은 소멸이 된다. 파산채권자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파산채권은 소멸되지만 파산인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¹⁴⁶⁾

145)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449~451.

146)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61.

제 4 장 會社整理(重整)節次

제 1 절 會社整理(重整)節次의 申請과 期間

1. 會社整理(重整)節次의 新設

중국의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돈(整頓)제도’¹⁴⁷⁾를 대신하여 변제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파산청산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갹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현대적인 재건형 파산제도의 일종인 ‘회사정리(重整)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¹⁴⁸⁾

新 『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절차는 일종의 사법적 요소의 회사정리절차로서 ‘重整’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의 주도하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전부 혹은 일부의 채무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¹⁴⁹⁾

회사정리절차는 실질적으로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산재산을 해체·환가함으로써 중국적으로 기업의 소멸을 가져오는 파산절차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화해제도와 동일하나 단순한 파산예방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화해절차에 비해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갹생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양자가 대비된다.¹⁵⁰⁾

147) ‘정돈(整頓)’이란, 국유기업의 상급주관기관이 기업의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말하며, ‘구조조정’ 또는 ‘Workout’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148) 陣昶屹, “破産重整制度的建立与完善”, □□法律活用□□, 2005년 3월, p.19. 新 『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重整’은 우리나라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갹생’에 속한다.

149)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236~237.

150) 서울지방법원, 『회사정리실무(개정판)』, (2001년 12월 서울지방법원), p.1~2.

회사정리절차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의 지속 및 회사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청산절차를 신청한 후에도 기업이 당해 절차를 통해 파산청산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개시의 다원화, 정리절차의 다양화, 타절차보다는 우선적용, 참여주체의 다양성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적절히 추구하고 있다.

2. 會社整理(重整)節次의 開始申請

(1) 會社整理節次의 開始申請

회사정리절차는 新 『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한 원인이 발생할 때에 일정한 신청인이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¹⁵¹⁾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적용대상이 기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의 회사정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원인을 폭넓게 규정하여 채무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출자자가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기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¹⁵²⁾

①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는 2가지의 경우가 가능한데, 첫 번째의 경우 기업법인이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변제능력을 결여한 것이 분명한 경우 회사정리

林采洪·白昌勤 著, 『회사정리법(上)』, (2002년 5월, 한국사법행정학회), p.36~38.

151) 鄒海林, “我國企業再生程序的制度分析和活用”,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p.54.

152)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釋義□□, (北京, 人民出版社, 2006), P.232~233.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채무자의 ‘피동적인 신청’이라고 일컫고 있다.¹⁵³⁾

②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결여한 것이 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출자자가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출자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출자자는 반드시 채무기업등록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

만약, 회사정리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정리절차에서 바로 파산청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회사정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 둘째, 이미 관계인회의를 통과한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의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 셋째,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⁵⁴⁾

(2) 會社整理節次 開始申請의 審査 및 裁定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채무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출자자가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은 접수된 회사정리절차 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와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153) 安建 等 編著, 전계서, p.87.

154) 李國光 主編(2), 전계서, p.383.

인민법원에서는 회사정리절차 신청기업에 대해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가능성여부, 채무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변제능력의 결여 여부 등의 법정요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하고, 신청인의 자격조건·신청서의 형식요건과 내용·회사정리절차 신청을 접수한 법원의 관할권문제·회사정리절차 비용의 납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¹⁵⁵⁾

인민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신청이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 채무기업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재정을 하고, 동시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재정을 공고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 피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 인민법원이 재정한 채무기업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기간 ; 채권의 기한, 지점과 주의사항의 신고 ;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업무처리의 주소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혹은 자산 보유자가 관리인에게 채무변제 혹은 자산교부에 대한 요구 ; 제1차 채권자회의 개최의 시간과 장소 ; 인민법원이 통지 또는 공지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3. 會社整理(重整)節次의 期間

(1) 會社整理節次 期間

新『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절차 기간’은 인민법원이 채무자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재정한 날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일까지를 말하며, 회사정리를 위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를 재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에서 확정된 회사정리절차 일시를 말하며,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은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날을 말하며,

¹⁵⁵⁾ 湯維建 主編(1), 전개서, p.352~353.

이것은 곧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 재정 중에 회사정리절차를 확정된 종결일을 말한다.¹⁵⁶⁾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재정해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① 채무자의 경영 상태와 재산상태의 계속적인 악화, 구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② 채무자가 사기나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한 경우 ; ③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해당한다.

(2) 會社整理節次 期間內의 債務財産 및 營業管理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규정된 직권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을 관리하게 되는데,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사무를 경영관리인을 선임하여 영업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게 하는 비교적 융통성 있는 관리체제를 채택하고 있다.¹⁵⁷⁾

또한, 중국에서는 회사정리절차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회사정리기간 중에 채무자의 신청으로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의 감독 하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관리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Debtor in Position(DI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⁵⁸⁾ 이 경우, 관리인은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해야 하고, 채무자는 관리인의 직권을 행사하게 된다.

156)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66~167.

157)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37~239.

158)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352.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즉,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담보권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행사는 잠시 중지된다. 단, 담보물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가치감소의 가능성이 명백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경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회사정리기간 동안에 영업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¹⁵⁹⁾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 기간에 환취권을 행사할 경우 新「企業破産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프랜차이즈, 넷팅, 리스 등 새로운 금융계약과 소유권 유보 등 비전형담보권의 효력을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명문화 하였다.¹⁶⁰⁾

新「企業破産法」에서는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의 출자자는 투자수익의 배당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의 대표이사·감사·고위급 관리자의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해서도 아니 된다는 수익분배권과 양도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 절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作成과 批准

1.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作成

(1)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作成 主體 및 期限

채무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회사정리절차를

159) 吳高盛 主編, 전계서, p.169~171.

160) 李國光 主編(2), 전계서, p.390.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정리(重整)계획안이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채무기업의 채무정리 및 재건을 위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의 심리 및 가부의 결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률문건을 말한다.¹⁶¹⁾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 계획안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안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정리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한다. 만약 DIP제도를 시행하여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채무재산과 영업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¹⁶²⁾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작성한 회사정리 계획안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정리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이 만기된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3개월 기간 연장을 재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법정기한 이내에 회사정리계획초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2)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主要 內容

회사정리계획은 정리절차의 핵심이며 정리절차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는 계획안의 내용 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정리계획은 한 회사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유지·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행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해

161)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396~397.

162) 郭智慧 編著, 전게서, P.300.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변경을 하는 경우 공정·형평과 평등의 원칙에 기인하여 작성해야 한다.¹⁶³⁾

新『企業破産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계획안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① 채무자의 경영방안 ; ② 채권 분류 ; ③ 채권조 변경방안 ; ④ 채권수당방안 ; ⑤ 회사정리계획의 수행 기한 ; ⑥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감독기한 ; ⑦ 채무자 회사정리에 유리한 기타 방안이 있다.

2. 會社整理(重整)計劃案에 대한 決議와 批准

(1) 會社整理計劃案에 대한 決議

작성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채권자회의에 참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자자 대표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의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에서 토의된 회사정리계획안은 채권분류에 따라 조별로 나누어 의결하는데, 조별의결방식은 화해절차 중에 채권자회의에서의 전체의결방식과 구별이 된다.¹⁶⁴⁾ 즉, 각 조별로 贊否를 결정하여 각 의결조가 찬성하였을 때 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된다.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회의에 참석한 채권자는 다음의 채권분류에 따라 조별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¹⁶⁵⁾

①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채권 ; ② 채무자가 채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체비용, 근로

163)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353.

164)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70.

165)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277~278.

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 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 ③ 채무자가 체납한 세금 ; ④ 보통채권이 있다.

회사정리계획안에 상술한 채권 중에 채무자가 체불한 근로자 임금 및 각종 보상금 이외의 사회보장보험비용의 감면을 규정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항목비용의 채권자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통채권조에 소액채권조를 소집하여 회사정리계획초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고, 회사정리계획안이 출자자의 권리변경과 관계된 경우 별도로 출자자의 의결조를 소집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한다.¹⁶⁶⁾

(2) 會社整理計劃案에 대한 可決

채권자회의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별로 분류된 각 의결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가결요건이 서로 다르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¹⁶⁷⁾

新 『企業破産法』에 따르면 회사정리계획안은 각 의결조에서 모두가결될 경우 정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동일조의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액이 당해 의결조 채권 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조에서 회사정리계획초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부 의결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초안이 부결한 의결조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이후 그 의결조에서는 한 번의 재표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쌍

166)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89~190.

167) 郭智慧 編著, 전게서, p.308.

방의 협상결과는 기타 의결조의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會社整理計劃案의 認可裁定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채권자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규정해 두고 있다.¹⁶⁸⁾ 즉, 회사정리계획안이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당해 계획안이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정리계획안이 법률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 대한 인가신청을 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에 대한 재정을 하며, 동시에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또한, 채권자회의에서 부결된 회사정리계획안이 일정한 법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회사정리계획초안의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강행비준을 시행하고 있다.¹⁶⁹⁾

당해 법정요건에는 ①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담보권의 특정재산을 전액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채권이 변제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 담보권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결의조에서 이미 회사정리계획초안이 가결된 경우 ; ②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보상금과 체납세금에 대한 채권을 앞으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상응한 결의 조에서 회사정리계획초안이 이미 가결된 경우 ; ③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보통채권이 획득한

168) 安建 主編, 전게서, p.101~102.

169)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71.

변제비율이 그 회사정리계획안이 제청되어 인가를 받은 때에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변제비율 보다 낮지 않거나, 또는 당해 결의 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이미 통과된 경우 ; ④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이 출자자의 권리에 대해 공평·공정하게 변경 되었거나, 또는 출자자조에서 회사정리계획초안이 이미 통과된 경우 ; ⑤ 회사정리계획안의 조건이 동일한 결의조의 구성원 사이에는 공평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정리계획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변제 순서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⑥ 채무자의 경영방안이 가능성을 구비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에 관한 재정을 해야 한다.

(4) 會社整理(重整)計劃 認可裁定の 法律效力

新『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을 거친 회사정리계획은 채무자와 전체채권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주의 권리는 면책·소멸의 대상이 된다.¹⁷⁰⁾

회사정리계획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정리절차 중에 신고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 수행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회사정리계획 수행 기간이 완료된 이후 회사정리계획에서 규정한 동류 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¹⁷¹⁾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게 향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회사정리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삭감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한다.

170)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 419~420.

171)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98~199.

제 3 절 會社整理(重整)計劃案의 遂行과 終止

1. 會社整理(重整)計劃의 遂行 및 監督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은 회사정리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¹⁷²⁾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인민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인가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지고 회사정리계획을 수행하고,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사정리계획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담당자는 채무자이며, 채무자가 회사의 사업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사정리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러한 업무의 수행은 이해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형평성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파산법에서는 이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를 관리인의 감독 하에 두고 있다.¹⁷³⁾

회사정리절차계획을 수행하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재정한 날로부터 회사정리계획에서 규정한 감독기간 동안 관리인에게 회사정리계획의 수행현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 수행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에 대해 인가재정을 한 후에 관리인은 채무자로부터 인수받은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감독기간이 만기되면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리인의 감독직무책임은 종결이 된다. 그러나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회사정리계획수행의 감독

172)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357.

173) 吳高盛 主編, 전게서, p.192~193.

기간 연장을 재정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제출한 감독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조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會社整理(重整)節次의 終止와 法律效力

(1) 會社整理節次의 終止¹⁷⁴⁾ 要件

중국에서는 회사정리절차의 종지(終止)를 곧 정리절차의 실패로 간주하고 있으며,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 전·후를 기준으로 회사정리절차의 종지(終止)를 규정하고 있다.¹⁷⁵⁾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였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이미 가결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를 종지(終止)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¹⁷⁶⁾

또한,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재정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해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을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민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종지재정(終止裁定)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2) 會社整理節次 終止의 法律效力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재정을 받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해 인민법원은 정리절차를 종지(終止)하고 파산청산

174) 郭智慧 編著, 전게서, p.312~314.

175)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85~286.

176) 한국 파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결 또는 종료’를 중국 『企業破産法』에서는 ‘終止’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절차를 선고하고 있다.¹⁷⁷⁾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회사정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강제집행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 둘째, 이미 관계인회의를 통과한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의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 셋째,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을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재정을 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불가능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인민법원은 관리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회사파산요건에 부합한 경우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의 終止裁定하고 파산을 선고한다. 둘째,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 수행의 終止(終止)재정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회사정리계획에서 작성한 채권변경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셋째, 채권자가 회사정리계획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계속 유효하고,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부분은 파산채권이 된다. 당해 규정의 채권자는 기타 동순위 채권자와 자신이 받은 변제가 동일비율일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넷째, 회사정리계획 수행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다섯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회사정리계획수행이 완료된 때부터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다시 부담하지 아니 한다.

177)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292~293.

제 5 장 和解節次

제 1 절 和解節次의 開始

1. 和解節次의 새로운 變化

중국의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의법(和議法)」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의(和議)’를 ‘화해(和解)’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회의 양보를 전제로 채무를 해결하는 합의를 이루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법률절차를 말한다.¹⁷⁸⁾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도 新 「企業破産法」과 같이 화해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 화해절차는 기업의 상급주관부서가 기업의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일련의 행정조치인 정돈절차와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¹⁷⁹⁾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채권자 및 기업경영자가 배제되고 법원이 整頓節次를 주관할 수 없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적 색채를 배제하기 위하여 파산기업의 상급주무기관이 관여하는 整頓節次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가 화해절차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¹⁸⁰⁾

또한, 舊 「企業破産法(試行)」은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화해에 성공하였거나 또는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파산선고를 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

178)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440.

179)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376~377.

180)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90~291.

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정사유에는 ① 공유기업과 국가민생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 정부의 지원 등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경우 ; ② 담보를 취득하여 파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다.¹⁸¹⁾

이에 반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충분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기에 이른 채무전부를 변제한 경우 ;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른 채무전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절차의 종료를 재정하는 사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어 행정적 색채를 감소시켰다.

2. 和解節次의 開始申請 및 裁定

화해절차는 파산적 청산을 예방하고 기업경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화해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 개시의 원인이 존재하고 화해장애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화해신청이 있어야 한다.¹⁸²⁾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절차는 파산청이 있는 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비로소 진행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법률이 규정한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채무에 대한 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화해절차 개시신청에 관해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채권자가 화해절차를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新 『企業破産法』은 화해절차 개시신청을 채무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³⁾ 즉, 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181)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378~379.

182) 安建 主編, 전게서, p.134~136.

183)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89~290.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기업법인을 말한다.

화해절차 개시신청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에는 다시 화해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신청한 화해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개시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화해절차 개시신청의 심사내용에 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채무상환에 필요한 자산상태 등의 실질적인 요건과 화해절차신청인의 자격요건, 신청서의 형식 및 내용 등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 하고 있다.¹⁸⁴⁾

만약, 화해절차 개시신청이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개시재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화해절차 재정을 한 날부터 채권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2 절 和解協議案의 作成과 決議

1. 和解協議案의 作成

화해협약안은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출하고 채권자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통과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채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이다.¹⁸⁵⁾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인민법원이 화해절차 신청을 수리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피신청기업의 주관부서가 법원과 채권자회의에 정돈을 신청하고 정돈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화해절차를 신청할 경우 화해절차 신청서 및

184) 李國光 主編(2), 전계서, p. 499~450.

185) 湯維建 主編(2), 전계서, p.307~308.

관련서류와 함께 화해협의를 작성하여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파산법(시행)의 집행을 관철하는데 발생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정돈방안에는 도산의 원인분석, 정돈절차 시행을 위한 조직과 조정계획, 경영관리개선 조치와 구조조정 조치 등의 실행가능성 방안, 정돈의 기한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채무자가 작성하는 화해협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채무자의 재산 ; ② 채무자의 경영방안 ; ③ 채권분류 ; ④ 채권변경 방안 ; ⑤ 채무상환기한 등이 있다. 이 중 채무기업의 재산은 화해협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회의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무형재산을 포함한 기업의 자산현황, 채무채권의 액수, 부동산 임대 및 무형재산의 수익, 채무기업의 연도별·회기별 손이익의 예측 등이다.

채무자가 작성된 화해협의안을 채권자회의에 제출하고 채권자회의에서 결의방식으로 통과시키면 이 화해협의안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¹⁸⁶⁾

2. 和解協議案에 대한 決議와 批准

(1) 和解協議案에 대한 決議와 認否裁定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인민법원이 채무기업에 대해 화해절차 개시재정을 한 후에 반드시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화해협의안에 대한 토의를 해야 하고 토의된 화해협의안은 결의형식을 통해 통과하게 된다.¹⁸⁷⁾

화해협의안은 채권자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표한 경우 통과되나,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작

186) 安建 主編, 전개서, p.115~116.

187)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개서, p.294-295.

성된 화해협의안의 경우에 인민법원은 무효재정을 하고 동시에 파산을 선고한다.

이외에, 동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만이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결권을 향유하고, 미확정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미확정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임시 확정된 채권액 이외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향유할 수 없다.¹⁸⁸⁾

화해협의안은 결의형식을 통해 통과된 후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인가재정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¹⁸⁹⁾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화의협의안은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화해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는 화해절차의 성립이 채권자들만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수채권자를 보호하고 채권자간의 평등 및 화해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최종 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2) 和解協議案의 法律效力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된 화해협의안은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을 거쳐 공고한 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¹⁹⁰⁾ 즉,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을 받은 화해협의안은 채무자와 전체 화해채권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¹⁹¹⁾

화해채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협의 집행기간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화해협의가

188)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453~456.

189) 安建 主編, 전게서, p.115.

190) 湯維建 主編(2), 전게서, p.308~311.

191) 여기에서 말하는 ‘화해채권자’란, 인민법원에서 파산신청 수리를 받은 때에 채무자에 대한 무담보채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완료 된 후에는 화해협의 규정의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화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권리는 화해협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제 3 절 和解節次의 遂行과 終止

1. 和解節次의 遂行

화해절차의 수행이란, 화해협의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의미하며, 채무자와 화해채권자 모두는 화해협의안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¹⁹²⁾

화해협의안의 엄격한 수행은 채무자의 법정 의무를 말하며, 新『企業破産法』에서는 화해협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기한, 변제액수, 변제방식 등의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화해협의안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화해협이가 이행완결 된 날부터 채무자는 변제책임을 다시 부담하지 아니 하며, 채권자가 화해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계속해서 유효하고, 화해채권을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이 된다.

만약, 채무자가 화해협의안을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협의안의 이행종결 재정을 내려야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다.

2. 和解節次의 終止와 法律效力

(1) 和解節次의 終止

화해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채권회의에서 화해협의안이 가결되면 인민법원은 인가재정을 하고 화해절차를 종지(終止)하게 되

192) 安建 主編, 전개서, p.117.

는데 이때 화해절차 종지재정(終止裁定)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한다.

화해절차의 종지재정(終止裁定)이 내려지면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해야 하고, 인민법원에 직무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인민법원은 자신의 직권 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화해절차 종지재정(終止裁定)하고 파산청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①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이후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가 채권채무의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 ② 화해협의안이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③ 채무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2) 和解節次 終止의 法律效力

인민법원이 新 『企業破産法』의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이 화해절차 종지재정(終止裁定)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의 파산이 선고된다.¹⁹³⁾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화해협의안의 경우 인민법원의 무효재정과 채무자의 파산이 선고되며, 이때 화해채권자가 화해협의의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기타 채권자가 받은 변제와 동일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협의안의 수행 종지재정을 내린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협의에서 작성한 채권변경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당해 채권자는 기타 채권자와 자신이 받은 변제가 동일 비율인 경우에 한해서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화해협의안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해협의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¹⁹⁴⁾

193)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 草案組 編, 전게서, p.296.

194) 吳高盛 主編, 전게서, p.211~212.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절차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화해절차와 회사정리절차의 상호 전환을 금지하고 있다.¹⁹⁵⁾ 즉, 화해와 회사정리절차 중에 일단 어느 한 절차를 선택하게 되면 이들 절차 사이에는 상호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자는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195) 李永軍, 전계문, p.133~135.

제 6 장 其他 特殊破産과 法的 責任

제 1 절 其他 特殊破産

1. 政策的 破産

(1) 政策的 破産의 意義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시행하는 파산의 특수한 업무를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업무란 주로 국유 토지사용권 환가금 사용, 은행대손 충담금 상각과 근로자 재취업을 통해 파산기업의 근로자 안치(安置)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¹⁹⁶⁾

중국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국유기업들이 체제개혁의 심화와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기업의 체제와 구조조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자 파산절차의 진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근로자의 안치(安置) 문제와 생활보장 등의 역사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파산절차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당해 절차를 시행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舊 『企業破産法(試行)』 제4조, 제42조 등을 근거로 1994년 상해·천진 등 18개 시에서 기업자본구조의 우량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국유기업의 적자생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의 합병파산과 관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한 일련의 특수한 정책이 바로 ‘정책적 파산’이다.¹⁹⁷⁾ 정책적 파산은 파산기업의 근로자 안치(安置)문

196) 安建 等 編著, 전게서, p.178.

197) 김성균, “중국 국유기업의 도산제도”,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7년 3월, p.61.

제와 생활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政策的 破産의 관련 規範內容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국유기업의 근로자의 안치문제와 생활보장에 관해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안치문제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¹⁹⁸⁾

- ① 파산기업 소재지의 인민정부는 舊 『企業破産法(試行)』 및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파산절차 중 조치를 취하고 먼저 근로자를 적절히 안치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일부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 자원고갈기업, 軍工기업의 파산 시 기준에 행정적 분배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의 환가금을 파산기업의 근로자의 안치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③ 법원이 파산재산 분배방안을 확정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기업이 파산기업의 재산을 일괄 인수하고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며 근로자 안치를 책임지는 경우 기업합병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98) 정책적 파산의 법적 근거로는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제4조, 제43조와 新 『企業破産法』의 제133조 이외에, 국무원이 1994. 10. 공포한 『몇몇 시에서 시험 실시하는 국유기업파산 유관 문제에 관한 국무원통지』, 1997. 3. 공포한 『몇몇 시에서 시험 실시하는 국유기업합병파산과 근로자재취업 유관 문제에 관한 국무원보충통지』, 2006.1.16 발표한 『전국기업합병파산과 근로자재취업업무지도소조에게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업무를 더욱 잘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전하는 국무원사무청의 통지』 등을 주요한 것으로서 열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2002. 7. 공포한 『파산법규정』 제105조는 국가계획조정에 편입되는 기업의 파산사건에는 국가의 기업파산 상환 규정 등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企業破産法』 외에 국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 ④ 토지사용권의 경매 등을 통해 얻은 양도소득은 먼저 근로자안치에 사용하고, 근로자의 주거·학교·幼托園·병원 등의 복리성 시설은 원칙적으로 파산재산에 들어가지 않으며, 파산기업 소재지의 인민정부가 직접 근로자의 안치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⑤ 만약, 해당 인민정부가 기업파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하여 기업이 채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新「企業破産法」과 國有企業의 政策的 破産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적 파산의 시행은 국유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고 국유경제의 경제효율을 제고하여 장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권리가 일반채권자보다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우월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담보권자보다 앞서는 면이 있어서 파산절차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진행과 채권자의 적정한 권리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행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사법절차가 되어야 할 파산절차가 왜곡되고 있다.¹⁹⁹⁾

新「企業破産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유기업을 정비하고 정책적 파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사법제도인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파산절차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과 관련한 사항들을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 파산에 대한 新「企業破産法」에서는 정책적 파산의 계속적인 실시를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무원이 2006년 1월 16일 발표한 「국무원관공청이 전국기업합병파산과 근로자 재취업 업무지도팀에게 전달한 국유기업의 정책적 파산업무를 진일보 진행하는데 필요한 의

199) 安建 等 主編, 전계서, p.178~181.

견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全国企业兼并破产和职工再就业工作领导小组关于进一步做好国有企业政策性关闭破产工作意见的通知(国办发[2006]号)』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기한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해 규정에 의하면 정책적 파산의 실시 기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200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정책적 파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²⁰⁰⁾

2. 金融機關의 破産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정부 유관기관이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국유기업의 불량자산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의 기업구제를 시행함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투자자와 저축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회사법』, 『상업은행법』, 『보험법』, 『금융법』 등에 의존하여 왔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단지 법조문상에서 금융기관의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²⁰¹⁾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상업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은 인민

200) 이러한 정책적 파산 관련 전체계획의 실시범위에 들어가는 기업은 합계 2,116호이고, 관련된 금융기관의 채권은 2,271.6억위엔이며 관련 근로자는 351만명이다.

201) 2003. 12. 27. 수정·공포된 『상업은행법』 제71조에서는 “상업은행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그 파산을 선고한다. 상업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인민법원의 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 등 유관부서와 관련자로 청산조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한다. 상업은행이 파산청산을 하는 때에는 청산비용, 체납하고 있는 직공의 임금과 노동보험비용을 지급한 후 개인의 저축원금과 이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의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심각한 경영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관리·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이 금융기관을 피고 또는 피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통일적으로 입법형식을 통해 최초로 규율한 것으로써 중국의 실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파산법률제도 확립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번영과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은 한 국가의 금융질서와 사회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을 시행할 경우 국무원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적 수단에 의해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련 법률의 규범에 따라 시장화 방식을 거쳐 파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²⁰²⁾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에 금융기관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채무자인 금융기관 자체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어떤 금융기관의 파산신청이 국무원금융감독관리부문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²⁰³⁾

202) 학계와 금융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절차규정인 『금융기관파산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王世虎,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파산조례』의 제정을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활성화와 법적과제□□, 2006년 12월 8일, 2006 한·중·일 국제세미나.

203)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감독위원회·증권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 이 세 가지 금융감독관리부문이 감독하는 기관을 금융기관라고 하나, 기타 감독관리부문이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예컨대, 中央人民銀行과 國家外換管理局이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 재정부문이 감독·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農村信用合作社 등의 금융기관이 있다.

제 2 절 法的 責任

1. 破産企業의 法定代表 및 高級管理 任員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파산기업의 법정대표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다.²⁰⁴⁾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파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 및 기업의 이사·감사·고급관리직의 임원 이외에 채무자 및 채무자와 관련 있는 관계자의 법률책임과 관리인의 법률책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대표이사(董事), 감사 혹은 고위직 관리자가 충실의무, 근면·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이 파산하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표이사(董事)·감사·고급관리직의 임원은 파산절차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董事), 감사, 고급관리직의 직책을 담임해서는 아니 된다.²⁰⁵⁾

또한, 채무자가 파산재산의 무상양도·재산담보의 제공·채무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양도한 행위 등을 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債務者 및 債務者와 關聯 있는 關係者

(1) 채무자의 법률책임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기업의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재산·문서 등 자료의 인계를 거부할 경우 벌금형을 부

204) 湯維建 主編(1), 전게서, p.477.

205) 王衛國, “新破産法草案与公司法人治理”, □□法學家□□, 2005년 2월, p.12.

과하고 있다.²⁰⁶⁾

①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법원에 재산현황의 설명·채무명부·채권명부·채무회계 관련 보고서 및 근로자 임금의 지불현황과 사회보장보험료 납부현황을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② 재산현황의 설명·채무명부·채권명부·채무회계 관련 보고서 및 근로자 임금의 지불현황과 사회보장보험료 납부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 ③ 채무자가 관리인에게 재산·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의 인계를 거부하거나, 또는 재산과 관련한 증거자료의 허위조작·훼손으로 인하여 재산현황의 파악이 불분명해진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채무자와 관련 있는 관계자의 법률책임

인민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또는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자를 인민법원이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인(拘傳)할 수 있고 동시에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답변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진술·답변을 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훈계·구류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²⁰⁷⁾

3. 管理人

관리인은 기업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재산관리와 기타 사무를

206)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 草案組 編, 전게서, p.351~353.

207) 李國光 主編(2), 전게서, p.532.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⁰⁸⁾ 新 『企業破産法』에 따르면 관리인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면·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① 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면·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면·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破産犯罪 및 刑事責任

舊 『企業破産法(試行)』에서는 기업파산의 범죄행위 예를 들면 직무소홀, 뇌물수수, 재산은닉,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 『중국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⁹⁾

新 『企業破産法』이 제정될 당시 파산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업파산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파산절차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목적외 사용죄, 설명의무위반, 사기파산죄, 구인불응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을 많이 하였으나, 新 『企業破産法』에서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²¹⁰⁾

新 『企業破産法』도 舊 『企業破産法(試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파산범죄의 유형과 그 형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중국 형법』에서 파산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208) 王欣新, 전계문, p.21.

209) 湯維建 主編(1), 전계서, p.491.

210) 李永軍, 전계문, p.121~122.

『중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파산죄, 파산청산방해죄, 국유기업 책임자의 무책임한 행위 또는 직권 남용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형과 RMB 2萬 이상 20萬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기파산죄는 회사, 기업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재산을 처분·이전하여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심한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중국 형법』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사기파산죄의 경우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형과 RMB 2萬 이상 20萬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¹⁾

국유기업 책임자의 무책임한 행위 또는 직권남용이 범죄를 구성할 경우, 『중국 형법』 제162조에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형에 처하고, 이 행위가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산청산방해죄는 회사·기업이 청산절차 진행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부채표 또는 파산청산방안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 회사·기업의 재산을 분배하여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심한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하여, 『중국 형법』 제16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형과 RMB 2萬 이상 20萬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 王欣新, 전계문, p.22.

제 7 장 結 論

중국은 新 『企業破産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파산법의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파산절차가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어 행정적 색채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은행대출의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은행권의 부실을 심화하는 원인이 되어 왔으며 회사정리나 영업부진 등으로 파산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보호 범위가 모호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어려웠다.

중국의 新 『企業破産法』은 상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채권자권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중국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촉진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新 『企業破産法』에서는 기업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적용범위를 개인사업자 이외의 모든 기업법인에게 확대하여 舊 『企業破産法(試行)』의 체계에서 기업법인의 파산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던 이원화된 체계를 통일화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의 화해절차와 기업정돈(重整)제도를 보강하여 회사정리(重整)절차를 신설하고 기업파산의 역외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파산기업 경영자의 불법파산에 대한 불법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파산절차 운영의 주체로서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파산기업의 담보권 우선변제를 실시하여 채권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국특유의 파산 국유기업의 근로자 안치(安置)문제를 중시하는 특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를 유지·보호하고 파산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지금은 중국투자에 실패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손실로 철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또는 외상투자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영업부실 등으로 파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모호한 중국의 법규와 중국정부의 회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 삼보컴퓨터가 중국 심양에 설립한 법인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중국정부와 법원이 파산신청 접수를 거부하여 매각을 추진한 일이 있었으며, 설령 법원의 파산재정이 내려지더라도 공장설비 및 부동산이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파산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정책적 파산에 따르는 막대한 국고의 투입으로 인한 부담과 사회적 파장 및 기업들의 위장파산 경향의 측면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한 新 『企業破産法』으로 인하여 중국은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또는 외상투자기업들이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重整)절차를 통해 청산이나 갱생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체계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체제에서 상업거래중의 신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WTO체제의 국제규범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법률체제와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新 『企業破産法』의 시행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회사정리(重整)가 가속화 되고 정부주도 하에 진행되어 왔던 정책적 파산으로 은행대출의 형태로 지급되었던 보조금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매각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의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²¹²⁾ 향후 임금채권보다 은행의 담보채권이 우선시됨에 따라 채권자의 권익이 강화되어 부실채권의 상품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²¹³⁾ 외상투자기업들의 M&A시장이 한층 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상환이 확실하거나 환금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예를 들면 현지법인이 소유한 토지사용권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여 왔으나 대출한 기업이 파산을 할 경우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채권행사가 어려웠으나, 新 『企業破産法』의 시행으로 현지법인들의 기업자산을 이용한 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금융기관들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현재까지 新 『企業破産法』의 후속규정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指定管理人的規定)』,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사건 심리 시 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企業破産案件確定管理人報酬的規定)』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最高法院關於《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施行時尚未審結的企業破産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²¹⁴⁾ 이외에 관련 규

21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6월말까지 은행과 4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약 3.1조 RMB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1.3조 RMB가 되며, 4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부실채권이 약 1.8조 RMB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3) 이미 국내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 매입과 함께 중국의 부실채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대상을 모색 중에 있다. 현대증권이 2005년 7월 미국투자회사 코스톤과 공동으로 660만달러 규모의 중국농업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2006년 8월에 미국 코스톤과 공동으로 華融資產管理公司로부터 2,800억원 상당의 工商銀行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214)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最高法院關於《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産法》施行

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파산절차과정에서 전개될 세부사항을 규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엇보다 파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新 『企業破産法』의 관련 법률의 제정과 함께 파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법률의 시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新 『企業破産法』의 시행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법으로서 향후 외상투자 유치를 위해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时尚未审结的企业破产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은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5차 회의에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다.

참 고 자 료

○ 국내문헌

1. 단행본

전병서, □□도산법□□, (서울: 법문사, 2006)

박승두, □□종합도산법 분석□□, (서울: 법률SOS, 2005)

제43기 특별연수, □□통합도산법□□,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6)

2. 논 문

손한기, “중국의 인민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제10권3호)□□, 2003.

박세근, “2005년 신 파산법 도입”, □□수은해외경제□□ 2004.8.

정설아, “중국 파산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 □□하나경제리포트□□, 2004.10.

차경자,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파산제도와 신 파산법초안의 내용 및 그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6.

김성균, “중국 국유기업의 도산제도”, □□기업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7.3.

○ 외국문헌

1. 단행본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 草案組 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釋義□□, (北京, 人民出版社, 2006)

참 고 자 료

- 李國光 主編, □□新企業破產法條文釋義□□,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6)
- 李國光 主編, □□新企業破產法理解与適用□□,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6)
- 吳高盛 主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條文釋義与活用□□,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6)
- 湯維建 主編, □□企業破產法新与旧專題活比与案較例應用□□, (北京, 法制出版社, 2006)
- 湯維建 主編, □□新企業破產法解讀与適用□□, (北京, 法制出版社, 2006)
- 王衛國 等編著, □□破產法□□,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6)
- 鄭 樣 等 編著, □□企業破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安建 等 編著, □□企業破產法實用教程□□, (北京, 法制出版社, 2006)
- 安建 主編,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釋義□□, (北京, 法律出版社, 2006)
- 譚兵 主編, □□民事訴訟法□□, (北京, 法律出版社, 2004)
- 郭智慧 編著, □□新企業破產法操作指南与文書范本□□, (北京, 法制出版社, 2006)

2. 논 문

- 韓長印, “中國破產法的發展將況及法學論題”, □□民商法學□□, 2005.1.
- 李永軍, “中國破產法程序与實體問題解析”, □□영산법률논의□□ 第3卷 第2號,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2006.
- 汪世虎, “中國金融機構破產立法問題研究”, □□한·중·일 경제 활성화와 법적 과제□□, 2006년 12월.
- _____, “破產法程序結構与利益平衡機制”,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 李曙光·王佐發, “中國破產法實施的法律經濟分析”,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 鄒海林, “我國企業再生程序的制度分析和活用”,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 王欣新, “破產別除權理論与實務研究”, □□政法論壇□□, 第25卷 第1期, 2007年 1月.
- _____, “新破產法透析(上,下)”, 中國人民大學法學院財經法論壇(第8期), 2006년 10월 31일 발표논문
- _____, “論新破產立法中債權人會議制度的設置思路”, □□法律活用□□, 2005년 3월.
- _____, “論新破產立法中管理人議制度的設置思路”, □□法學雜誌□□, 2004년 5월.
- 盧 偉, “新破產法中的重整制度評析”, □□中國律師□□, 2006년 12월.
- 上官文慶, “破產抵銷權制度應廢除”, □□中國律師□□, 2006년 12월.
- 王利明, “關於勞動債權与擔保物權的關係”, □□法學家□□, 2005년 2월.
- 王衛國, “新破產法草案与公司法人治理”, □□法學家□□, 2005년 2월.
- 陣昶屹, “破產重整制度的建立与完善”, □□法律活用□□, 2005년 3월.
- 趙建聰, “破產企業職工經濟補償金的合理性探究”, □□人民司法□□, 2004년 10월.
- 李曙光, “新破產法的管理人制度”, 中外民商裁判网 2007년 1월 5일, <http://www.chinainsol.drg/Article_print.asp?ArticleID=696>.
- 新華网 보도자료, “企業破產要向法院提交職工安置和工資支付情況, 2006년 8월 27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6-08/27/content_5013160.htm>

참 고 자 료

Ann vom Eigen, "China's New Bankruptcy Law Encourages Investment",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Journal 25-8 ABIJ 8 October 2006/
http://www.lexis.com/research/retrieve?_m=bdb6cecc278f478d23a83a9b74983536&docnum=4&_fmtstr=FULL&_startdoc=1&wchp=dGLbVzW-zSkAB&_md5=8c6530eb31400e9cd3f272726aaa2b4b&focBudTerms=china&focBudSel=all

Jiong Deng, "Building an Investor-Friendly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 System in China", 2005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Summer, 46 Harv. Int'l L.J. 347, 2005/ http://www.lexis.com/research/retrieve?_m=79ed72904257e7ff54a7946963130618&docnum=2&_fmtstr=FULL&_startdoc=1&wchp=dGLbVzW-zSkAB&_md5=223365a8a98a11a5adeb2d66bbeeb1bf6&focBudTerms=&focBudSel=all

Moderated by C. Edward Dobbs, SYMPOSIUM: THE FOURTH ANNUAL EMORY BANKRUPTCY DEVELOPMENTS JOURNAL SYMPOSIUM, MARCH 1, 2007: BUSINESS BANKRUPTCY PANEL: THE BRAVE NEW WORLD OF FINANCE, 2007 Emory Bankruptcy Developments Journal Spring, 2007 23 Bank. Dev. J. 549/
http://www.lexis.com/research/retrieve?_m=35705a9a5f97a4caa17b96a50471538f&docnum=1&_fmtstr=FULL&_startdoc=1&wchp=dGLbVzW-zSkAB&_md5=f5595f340681d5ded7c1d1ecfb29e6f3&focBudTerms=&focBudSel=all

부 록

◆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2006년 8월 27일 제10회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신청과 수리
 - 제 1 절 신 청
 - 제 2 절 수 리
- 제 3 장 관리인
-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
- 제 5 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 제 6 장 채권신고
- 제 7 장 채권자회의
 - 제 1 절 일반규정
 - 제 2 절 채권자위원회
- 제 8 장 회사정리절차
 - 제 1 절 회사정리절차 신청과 회사정리기간
 - 제 2 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작성과 비준
 - 제 3 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수행
- 제 9 장 화 해
- 제10장 파산청산
 - 제 1 절 파산신고
 - 제 2 절 환가와 배당
 - 제 3 절 파산절차의 종결
- 제11장 법적 책임
- 제12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기업파산절차를 규범화하고 채권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기업법인이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전부를 상환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경우 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다.

기업법인이 상기 규정의 상황에 처한 경우, 혹은 변제능력의 가능성을 확연히 상실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파산사건의 심리절차에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조 이 법에 따라 개시된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효력이 있는 파산사건과 관련한 외국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였거나 혹은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을 위배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영토 내에 있는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승인과 집행을 결정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이 파산사건을 심리할 경우 법에 따라 기업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파산기업 경영관리자의 법률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과 수리

제 1 절 신청

제 7 조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처한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회사정리,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으나 자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 청산책임자가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파산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신청인, 피신청인의 기본사항 ;
- (2) 신청목적 ;
- (3) 신청사실과 이유 ;
- (4) 인민법원에서 정한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자산현황설명, 부채세부목록, 채권세부목록, 재무회계관련 보고, 사원 안착예비안 및 사원임금 지불과 사회보장보험금 납부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이전에 파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 절 수 리

제10조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의기간 만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 의해 상기 2개항 규정의 수리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상급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자산현황설명, 부채세부목록, 채권세부목록, 재무회계관련 보고, 사원 안착예비안 및 사원임금 지불과 사회보장보험금 납부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한 경우 재정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재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파산선고를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심사를 통해 발견

한 경우 신청기각을 재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를 결정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파산신청 수리를 재정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이미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통지와 공고를 해야 한다.

- (1) 신청인, 피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
- (2) 인민법원의 파산신청을 수리일시 ;
- (3) 채권 신고기한, 장소와 주의 사항 ;
- (4) 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사무장소의 주소 ;
- (5) 채무자의 채무자 혹은 자산 보유자가 관리인에게 요구한 채무변제 혹은 자산이관 ;
- (6) 제1차 채권자회의 개최의 시간과 장소 ;
- (7) 인민법원이 통지 또는 공지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재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파산절차 종결일까지 채무자의 관련자는 아래에 열거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1) 본인이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 ;
- (3)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서 채권자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 ;
- (4)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주소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5) 기타 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직을 새로 역임해서는 아니 된다.

전항 규정에서 칭한 관련자란, 인민법원에서 결정한 기업의 재무 관리인사와 기타 경영관리인을 포함한 기업의 법인대표를 말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에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에게 변제한 채무는 무효이다.

제1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거나 또는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자 또는 재산 소유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거나 또는 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전항의 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채권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당해 채무변제 또는 재산 이관 의무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인은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이전에 체결하고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 해제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관리인이 파산신청이 수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최고(催告)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인이 계약의 계속이행을 결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단, 상대방 당사자는 관리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관리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 재산과 관련한 보전조치를 해지하고 집행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이미 개시하였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소송 또는 중재는 중지하여야 하며,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인도 받아 관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법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다.

제 3 장 관리인

제22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서 선임한다.

채권자회의에서 관리인이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기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관리인의 경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인 보수의 확정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서 규정한다.

제23조 관리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인민법원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며,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채권자회의에서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은 유관부문, 기관의 인입직원으로 구성된 청산팀 혹은 법에 따라 설립한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사회중개기구에 의견을 구한 후 당해 기관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자격

증을 취득한 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관리인을 담임할 수 없다.

- (1) 고의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2) 관련 전문자격증서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
 - (3)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 (4) 인민법원에서 관리인 인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경우.
- 개인이 관리인을 담임한 때에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인은 아래 열거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 (1) 채무자의 재산, 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의 인수·관리 ;
- (2)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 (3) 채무자의 내부관리 업무를 결정 ;
- (4) 채무자의 경상지출과 기타 필요한 지출 결정 ;
- (5) 제1차 채무자회의 소집 이전에 채무자의 영업 활동의 계속 또는 정지여부 결정 ;
- (6) 채무자 재산의 관리와 처분 ;
- (7) 채무자를 대표해서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에 참여 ;
- (8) 채무자회의 소집제의 ;
- (9) 인민법원이 관리인이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한 기타 직책.

이 법이 관리인의 직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제1차 채무자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 활동 또는 이 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중의 하나를 계속해서 이행하거나 또는 정지 결정을 할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관리인은 근면하고 책임을 다해 성실히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28조 관리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직원을 초빙할 수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인민법원이 확정한다. 채권자회의에서 관리인의 보수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인이 사임할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채무자의 재산

제30조 파산신청 수리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전부와 파산 신청이 수리된 때부터 파산절차 종결 전까지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한다.

제3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 1년 내에 채무자 재산과 관계되는 아래에 열거한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대해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1) 재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
- (2)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 ;
- (3) 재산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재산담보를 제공한 경우 ;
- (4) 채무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 (5) 채권을 포기한 경우.

제3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기 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이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에 처하고 여전히 개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개별 채무변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수익을 본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33조 채무자 재산과 관계되는 아래에 열거한 행위는 무효이다.

- (1) 채무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 양도한 경우 ;
- (2) 채무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허위채무를 인정한 경우.

제34조 이법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3조 규정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관리인은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3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의 출자자가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인은 당해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출자액의 납부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출자기한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감사와 고급관리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비정상적인 수익과 불법 점유한 기업의 재산을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인은 채무변제 또는 채권자가 수락한 담보제공을 통하여 저당물, 유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변제 또는 담보대체 시에 저당물 또는 유치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은 경우 당해 저당물 또는 유치물의 당시 시장가액에 한한다.

제38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재산의 권리자가 관리인을 통해 환취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당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의 채무자에게 이미 발송한 후 채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운송

중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단, 관리인이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채권자가 파산신청 수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관리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단, 아래에 열거한 사항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 (1)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수리 후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 ;
- (2)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파산신청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단, 채권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3) 채무자의 채무자가 이미 채무자가 채무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파산신청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단, 채무자의 채무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파산신청 1년 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장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제41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발생한 아래에 열거한 비용을 파산비용이라고 한다.

- (1) 파산사안의 소송비용 ;
- (2) 채무자 재산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
- (3) 관리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임금과 직원 초빙비용 ;

제42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발생한 아래에 열거된 채무를 공익채무라고 한다.

- (1)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쌍방 모두 이행미완료한 계약의 이행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
- (2) 채무자 재산이 무인관리를 받아 발생한 채무 ;
- (3) 채무자의 무당이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
- (4) 채무자의 계속영업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노동임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채무 ;
- (5) 관리인 혹은 관계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
- (6) 채무자 재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

제43조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과 공익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파산비용을 먼저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 또는 공익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 6 장 채권 신고

제44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향유하는 모든 채권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

제4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간을 반드시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제46조 변제기미도래의 채권은 파산신청이 수리된 날을 변제기 도래일로 간주한다.

이자부 채권은 파산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금리계산을 중지한다.

제47조 조건부 채권·기한부 채권과 소송·중재 미결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48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확정된 채권신고 기간 이내에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납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 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은 신고할 필요할 없이 관리인이 조사 후에 파산채권자표를 공시한다. 근로자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채권액과 재산상의 담보권 설정여부를 설명하고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채권이 연대채권인 경우 반드시 부과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연대채권자는 이들 중 1명이 연대채권자 전체를 대표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

제51조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들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기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미래 구상권을 채

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채권자가 이미 관리인에게 채권 전부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 수인의 연대채무자가 이 법 규정의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재정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각각 파산사안 중 구분하여 채권을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53조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4조 채무자가 위탁계약의 위탁자이고 이 법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기로 재정하였으나 당해 수탁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을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5조 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고 이 법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어음의 지급인이 계속해서 지불을 하였거나 또는 인수를 한 경우 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을 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 인민법원이 확정된 채권신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에는 파산재산의 최후배당 이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신고 전에 배당이 이미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보충배당은 다시 하지 아니한다. 보충신고 한 채권의 조사와 확정을 위한 비용은 보충 신고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7조 관리인은 채권신고 자료를 접수한 후 등록부에 등록하고 신고된 채권에 대해 조사를 하며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한다.

파산채권자표와 채권신고 자료는 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58조 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파산채권자표는 제1차 채권자회의에 반드시 제출하여 대조심사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확정판결을 한다.

채무자,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채권자 회의

제 1 절 일반규정

제59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채권자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결권을 향유한다.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미확정 채권의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임시 확정된 채권액 외에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향유하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제61조 제1항의(7), 제10항 규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향유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채권자회의에 참석할 경우, 인민법원 또는 채권자회의 의장에게 채권자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근로자 및 공회(公會)의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부 록

제60조 채권자회의는 의장 1인을 두며, 인민법원이 의결권을 지닌 채권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는 채권자회의 의장이 주관한다.

제61조 채권자회의에서는 다음 아래에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다.

- (1) 채권대조심사 ;
- (2) 인민법원에 관리인 경질청구, 관리인의 비용과 임금 심사 ;
- (3) 관리인에 대한 감독 ;
- (4) 채무자위원회 구성원의 선임과 경질 ;
- (5) 채무자 영업의 계속 또는 중지 결정 ;
- (6) 회사정리계획안의 의결 ;
- (7) 화해협약안 의결 ;
- (8) 채무자 재산의 관리방안 의결 ;
- (9) 파산재산의 환가방안 의결 ;
- (10) 파산재산의 배당방안 의결 ;
- (11)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고 인정한 기타 직권.

채권자회의에서는 결정한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 제1차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소집하고, 채권신고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 후의 채권자회의는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 총액의 1/4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의장에게 제의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채권자회의 소집은 관리인이 15일 이전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제64조 채권자회의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그가 대표한 채권액이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1/2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권자가 채권자회의의 결의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었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권자회의가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당해 결의 취소재정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회의에서 법에 따라 재의결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회의의 결의은 채무자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65조 이 법 제61조 제1항 제8호·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 채권자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지 아니 한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정한다.

이 법 제61조 제1항의 제10호의 사항이 채권자회의 제2차 표결을 통해서도 통과되지 아니 한 경우 인민법원에서 결정한다.

상기 2개 규정에 대한 재정은 인민법원이 채권자회의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별도로 채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6조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내린 재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점유한 채권자가 이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에는 재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기간 동안에 결정의 집행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채권자위원회

제67조 채권자회의는 채권자위원회 결성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 위원회에는 채권자회의에서 선임한 채권자 대표와 채무자의 근로자 대표 1인 또는 공회(公會)의 대표로 구성한다.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은 9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민법원의 서면결정을 받아 허가를 하여야한다.

제68조 채권자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직권을 행사 한다.

- (1)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감독 ;
- (2) 파산재산 배당에 대한 감독 ;
- (3) 채권자회의 소집에 대한 제의 ;
- (4) 채권자회의에서 위임한 기타 직권.

채권자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인·채무자의 관계자에게 그들의 직권범위 내의 업무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문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리인·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독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위원회는 감독사항에 대한 인민법원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9조 관리인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행할 경우,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 (1) 토지, 건물 등과 관계된 부동산 권한의 양도 ;
- (2) 탄광권·채굴권·지적재산권 등 재산권의 양도 ;
- (3) 예금전부 또는 영업권의 양도 ;
- (4) 대출 ;

- (5) 재산담보권 설정 ;
- (6) 채권과 유가증권의 양도 ;
- (7)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 모두 이행미완료인 계약의 이행 ;
- (8) 권리포기 ;
- (9) 담보물의 회수 ;
- (10)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기타 재산권에 대한 처분 행위.

채권자위원회를 결성하지 아니 한 경우, 관리인이 전항 규정의 행위를 시행하게 되면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사정리절차(重整)

제 1 절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과 회사정리 기간

제70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하고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또는 채무자 등록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액을 점한 출자자가 인민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 신청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인정한 경우,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재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72조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재정을 한 날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까지를 회사정리기간이라고 한다.

제73조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가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비준하면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 하에 자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항 규정의 경우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 업무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관리인의 직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제74조 관리인이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영업업무는 채무자의 경영관리인을 초빙하여 영업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제75조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행사를 잠시 중지한다. 단, 담보물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가치의 현저한 절하가 가능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경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영업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76조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한 타인의 재산을 그 재산의 권리가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에 회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7조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의 출자자는 투자수익의 배당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단,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 회사정리절차 기간 동안 아래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재정하여야 하며, 채무자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재산상태의 계속적인 악화, 구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 (2) 채무자가 사기 또는 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기타 행위를 한 경우 ;
- (3)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2 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제79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 재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과 채권자회의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규정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기간연장을 재정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기한 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 종지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채무자가 자체적으로 재산과 영업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한다.

관리인이 재산과 영업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한다.

제81조 회사정리계획안은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채무자의 경영방안 ;
- (2) 채권 분류 ;
- (3) 채권 조정방안 ;
- (4) 채권 변제방안 ;

- (5) 회사정리절차 계획의 수행 기한 ;
- (6) 회사정리절차 계획 수행의 감독기한 ;
- (7)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에 유리한 기타방안.

제82조 아래에 열거한 각종 채권의 채권자는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아래의 채권분류에 따라 조별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결의를 하여야 한다. :

- (1)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채권 ;
- (2) 채무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 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
- (3) 채무자가 체납한 세금 ;
- (4) 보통채권.

인민법원은 필요할 경우 보통채권조에 소액채권조를 결성하여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회사정리계획에서는 채무자가 체납한 이 법 제82조 제1항의 (2)규정 이외의 사회보장보험비용의 감면을 규정해서는 아니 되며 ; 당해 항목비용의 채권자는 회사정리계획초안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84조 인민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접수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일 의결조의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채권액이 당해 의결조 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할 경우 그 의결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회사정리계획안에 관해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85조 채무자의 출자자 대표는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안이 출자자의 권리변경사항과 관계된 경우 출자자의 의결조를 결성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회사정리계획안이 각 의결조에서 모두 가결될 경우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정리계획이 통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회사정리계획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7조 일부 의결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결의조와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 이후 이 결의조에서는 재 표결을 한 번 할 수 있다. 쌍방의 협상결과는 기타 결의조의 이익에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한 결의조에서 재 표결을 거절하거나 또는 재 표결에서도 가결되지 못한 회사정리계획초안이 아래 각호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의 (1)에서 열거한 채권 즉 당해 채권의 특정재산이 향후 전액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채권이 변제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 담보권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결의조에서 이미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된 경우 ;

- (2) 회사정리계획초안에 따라 이 법 제82조 제1항의 (2), (3)에서 열거한 채권이 향후 전액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상응한 결의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이미 가결된 경우 ;
- (3) 회사정리계획초안에 따라 보통채권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비율이 그 회사정리계획안 비준 제출 시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변제비율 보다 낮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결의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이미 통과된 경우 ;
- (4) 회사정리계획안이 출자자의 권리에 대해 공평·공정하게 변경되었거나, 또는 출자자의 의결조에서 회사정리계획안이 이미 통과된 경우 ;
- (5) 회사정리계획안이 동일한 결의조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공평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정리계획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변제 순서가 이 법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 (6) 채무자의 경영방안이 사업성을 구비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통해 전항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재정하여야 하며,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88조 회사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고 또한 이 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미 가결된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수행

제89조 회사정리계획안은 채무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를 재정한 후 이미 재산과 영

업무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0조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를 재정한 날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에서 정한 감독기간 동안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안의 수행을 감독한다.

감독기간 동안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회사정리계획안의 수행현황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감독기간 만기 시에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감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리인의 감독직무 책임은 종결된다.

회사정리계획안의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보고서를 조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 수행감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 인민법원의 인가재정을 받은 회사정리계획안은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신고한 채권은 회사정리계획안 수행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회사정리계획안 수행 기간이 완료된 후 회사정리계획규정의 동류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게 향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회사정리계획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제93조 채무자가 회사정리계획안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종결 재정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종결의 재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회사정리계획안에서 작성한 채권변경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계속 유효하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된다.

전항규정의 채권자는 기타 동순위 채권자와 자신이 받은 변제가 동일비율일 경우에 한해서만 계속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본조 제1항 규정의 상황에서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제94조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회사정리계획안 수행이 완료된 때부터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 9 장 화 해

제95조 채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부터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기 이전까지 인민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화해를 신청할 경우 화해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인민법원이 심사를 통해 화해신청이 이법의 규정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해절차개시를 재정하여야 하고, 공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화해협약안에 대한 토의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화해재정을 한 날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97조 채권자회의에서 화해협약안에 대한 결의는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채권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무담보 재산채권총액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표한 경우 가결된다.

제98조 채권자회의에서 화해협의안이 가결되면 인민법원은 허가재정을 하고 화해절차를 종결하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에게 재산과 영업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무집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화해협의안이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화해절차 종결재정을 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인민법원의 허가재정을 받은 화해협의안은 채무자와 전체 화해채권자에게 모두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채권자란,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때에 채무자에 대한 무담보 재산채권을 향유하는 자를 말한다.

화해채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화해협의안 수행기간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화해협의안이 집행 완료된 후에 화해협의 규정의 변제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1조 화해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권리는 화해협의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2조 채무자는 화해협의안의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조 채무자의 사기 또는 기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화해협의안은 인민법원이 무효를 재정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의 상황에서 화해채권자가 화해협의안의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기타 채권자가 받은 변제와 동일한 비율의 범위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채무자가 화해협의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화해협의를 수행종결재정을 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화해협의를 수행종결 재정을 한 경우 화해채권자가 화해협약에 작성한 채권조정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화해채권자가 화해협의를 수행으로 인하여 받은 변제는 계속해서 유효하며, 화해채권을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파산채권이 된다.

전항규정의 채권자는 기타 채권자와 자신이 받은 변제가 동일 비율에 달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화해협의를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제105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가 채권채무의 처리에 대해 자체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허가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된다.

제106조 화해협약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화해협약이 수행완료된 날부터 채무자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0장 파산정산

제 1 절 파산선고

제107조 인민법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 재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송달하며, 재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를 파산인이라 칭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산이 되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

시 채무자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칭한다.

제108조 파산선고 이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채무자를 위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 ;
- (2)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

제109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향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이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향유한다.

제110조 이 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변제를 완전히 받지 못한 경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보통채권이 되고,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경우 이 채권도 보통채권이 된다.

제 2 절 환가와 배당

제111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환가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제출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채권자회의에서 통과되었거나 또는 인민법원이 이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한 파산재산 환가방안에 근거하여 적시에 파산재산을 매각하여 환가하여야 한다.

제112조 파산재산을 환가할 경우 반드시 경매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파산기업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환가할 수 있다. 기업을 매각하여 환가할 경우, 이 중 무형재산과 기타 재산은 단독으로 매각하여 환가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경매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양도가 제한된 재산의 경우 국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3조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한 후에, 아래에 열거한 순서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 (1) 채무자가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 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 ;
- (2) 파산인이 체불한 전항규정 이외의 사회보장보험료와 파산인인이 체납한 세금 ;
- (3) 보통파산채권.

파산재산이 동일 순위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파산기업의 이사, 감사와 고급 관리인의 임금은 당해 기업의 직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제114조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은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 관리인은 적시에 파산재산 배당방안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제출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파산재산 배당방안에는 아래 각호의 내용들을 명시해야 한다.

- (1) 파산재산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
- (2) 파산재산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액수 ;
- (3) 배당할 수 있는 파산재산의 액수 ;
- (4) 파산재산의 배당순위, 비율 및 액수 ;
- (5) 파산재산 배당시행 방식.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 배당방안이 통과된 후 관리인은 당해 방안을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허가재정을 받아야 한다.

제116조 인민법원으로부터 허가재정을 받은 파산재산 배당방안은 관리인이 수행한다.

관리인이 파산재산의 배당방안에 따라 수차에 나누어 배당하는 경우 매차 배당시의 배당재산액과 채권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최후 배당시에 관리인은 최후배당을 공고하고, 동시에 이 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7조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은 당해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임치한 배당액이 최후배당 공고일에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에 대한 조건이 부합한 경우에는 기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하며, 최후배당 공고일에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조건이 부합된 경우 또는 해제조건부 채권에 대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8조 관리인은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파산재산의 배당액을 반드시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최후배당 공고일로부터 만 2개월 이내에 여전히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액 수령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인 또는 인민법원은 공탁한 배당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119조 파산재산을 배당할 경우 소송 또는 중재가 종결되지 아니한 미결채권은 관리인이 반드시 그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료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배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임치한 배당액을 기타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제 3 절 파산절차의 종결

제120조 파산인이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최후배당을 완료한 후에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재산 배당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에게 파산절차 종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파산절차 종결여부를 재정하여야 한다. 종결을 재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관리인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지참하고 파산인의 원 등록기관에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22조 관리인은 등기말소 수속을 완료한 다음날 직무집행이 종료된다. 단, 소송 또는 중재재정이 미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3조 이 법 제43조 제4항 또는 제120조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래 각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재산분배방안에 따라 추가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 (1)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재산을 발견한 경우 ;
- (2) 배당할 파산인의 기타 재산을 발견한 경우.

전항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재산이 배당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국고에 상납한다.

제124조 파산인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법에 따라 계속해서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장 법률책임

제125조 기업의 이사, 감사 혹은 고급 관리자가 충실의무, 근면·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업이 파산하게 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파산절차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사, 감사, 고급 관리직을 담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자를 인민법원이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인(拘傳)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답변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진술·답변을 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7조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법원에 허위로 작성한 재산현황의 설명·채무명부·채권명부·재무회계와 관련한 보고서 및 근로자 임금의 지불현황과 사회보장보험료 납부현황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제출을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인에게 재산·인장과 장부, 문서 등 자료의 인계를 거부하거나 또는 재산과 관련 증거자료를 허위조작·훼손하여 재산현황의 파악이 불분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책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8조 채무자가 이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한 경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자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9조 채무자의 관계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훈계·구류처분을 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0조 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면·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면·성실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2장 부 직

제132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파산자가 이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비·상해보조금·구제비용, 근로자 개인계좌에 이월되는 기본 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료 및 법률·행정법에서 규정한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보상금은 이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하고 변제에 부족한 부분은 이 법 제109조 규정의 특정재산에서 당해 특정재산에 대해 향유하고 있는 담보권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33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한과 범위 내에서 국유기업의 파산을 시행한 특수사례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4조 상업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무원금융감독관리기관이 심각한 경영부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관리·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인민법원에 당해 금융기관을 피고 또는 피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을 시행할 경우 국무원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관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5조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법인 이외의 조직에 대한 청산이 파산청산에 속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136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中華人民共和國企業破產法(試行)』을 폐지한다.